

2021학년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오리엔테이션



일 시	2021년 2월 26일(금)
장 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주 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2021학년도 의학과 오리엔테이션

1. 기획의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신입 학생들에게 의과대학 소개, 교육과정과 학사 및 학교생활 안내 그리고 학생회 소개를 통해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준비 및 적응을 돕기 위함.

2. 장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3. 일시

2021년 02월 26일 (금) 09:30 ~ 11:30

4. 대상

본과 신입생: 120명

5. 세부일정

09:30 - 09:40	학장님 인사	김종석 학장
09:40 - 09:50	의과대학 및 집행부 소개 - 사명과 성과 - 각 교실 및 집행부 소개	임석태 교무부학장
09:50 - 10:20	교육과정 소개 - 의과대학 교육 목적, 목표, 졸업성과, 시기성과 - 교육과정 구성 원칙 - 각 교육과정별 소개 - 학생평가 원칙	박호성 교육부학장
10:20 - 11:00	학사 및 학교생활 안내 - 학생 상담 시스템 - 학생 복지: 학자금 대출, 장학금, 의료공제, 경영자배상책임보험 등 - 부당행위: 인권센터 운영규정 -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 성적 이의 신청 절차 안내	윤현조 의학과장
11:00 - 11:20	학생회 소개	강정룡 학생회장
11:20 - 11:30	맺음말	김종석 학장

※ 행사당일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contents)



● 학교 소개	04
● 교육과정 소개	12
● 학사 안내	27
● 학교생활 안내	46
● 기초의학 안내	60
● 의과대학 학생회 소개	75
● 기타	77



학교 소개

- 사명·비전·핵심가치
-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 졸업성과
- 학교 조직도
- 집행부
- 전임교원 및 학생 현황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적은 지역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인을 육성하고 인류의 질병과 건강 증진을 책임질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함에 있다.

교육목표

1. 기본진료에 필요한 의학지식과 수행역량을 갖춘다.
2.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갖춘다.
3. 지역과 국제사회의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4. 의료인의 전문직업성을 갖춘다.
5. 창의적인 의학연구역량을 갖춘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성과

A. 기본진료

의학지식과 술기를 바탕으로 환자의 임상표현과 관련된 적절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검사, 치료와 예방계획을 세우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 A1.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기본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 A2. 임상표현에 대해 병력을 청취하고 필요한 신체진찰을 할 수 있다.
- A3. 임상표현과 관련된 술기를 시행할 수 있다.
- A4. 환자의 정보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단 추론을 할 수 있다.
- A5.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와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A6.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 A7.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숙지하고 행동할 수 있다.

B. 소통과 협력

사람에 대한 깊은 성찰을 근거로 사람, 환자, 보호자, 진료와 관련된 구성원, 보건의료 종사자 및 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 B1.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사람과 환자 및 보호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구성원 및 사회와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

C. 사회적 책무성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C1.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다.

D. 전문 직업성

직업정체성을 형성하고, 의료윤리적 소양을 배양하며,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준수하는 의료전문가로서 역량을 의미한다.

D1. 직업정체성을 바탕으로 의료윤리원칙에 근거하여 의료상황에 맞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다.

D2. 보건의약관계법규 등 관련법규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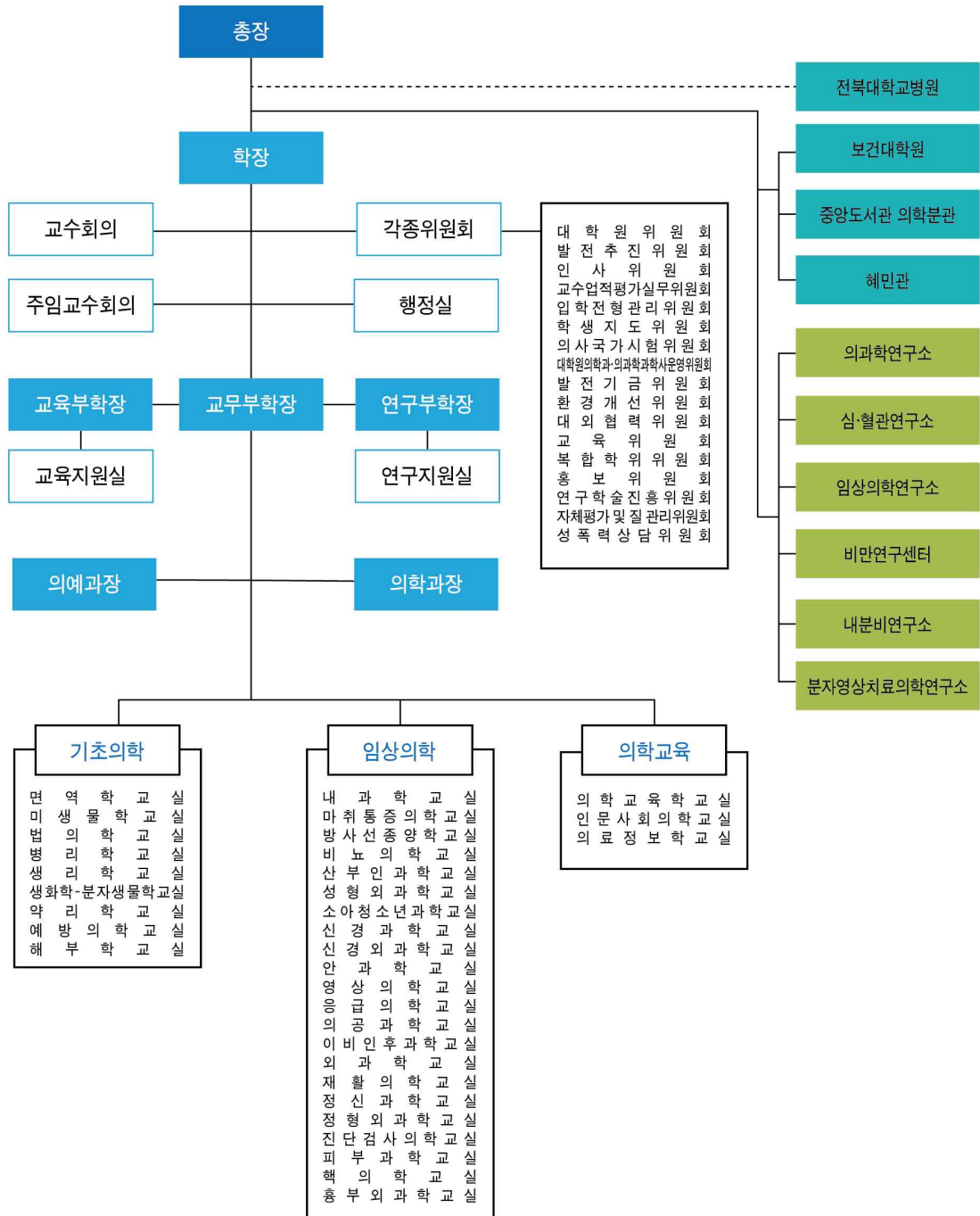
D3.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을 통해 의학과 인문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해당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E. 의학연구

의학자로서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의학지식을 심화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E1. 기본적인 연구능력을 갖추어 의학연구결과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학교조직도



집행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장
김종석



국시위원장
황정환 교수

의예과장
노시균 교수

기초주임
김수미 교수

임상주임
이은정 교수

연구부학장
김찬영 교수

교육부학장
박호성 교수

교무부학장
임석태 교수

CMS센터장
이영근 교수

의학과장
윤현조 교수

의학과 전임교원 및 학생 현황

1. 전임교원 현황

(2021.02.01. 기준)

구 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기초의학	28	3	4	35
임상의학	80	17	14	111
의학교육학		1		1
계	108	21	18	147

2. 학생 현황

(2021.02.01. 기준)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의예과	134	142			276
의학과	120	147	141	128	536





교육과정 소개

- 교육과정 개요
- 통합강의 교육과정
- 소통과 협력 교육과정
- 환자의사사회 교육과정
- 의학연구 교육과정
- 문제바탕학습 교육과정
- 임상의학입문 교육과정
- 증례바탕학습 교육과정
- 임상실습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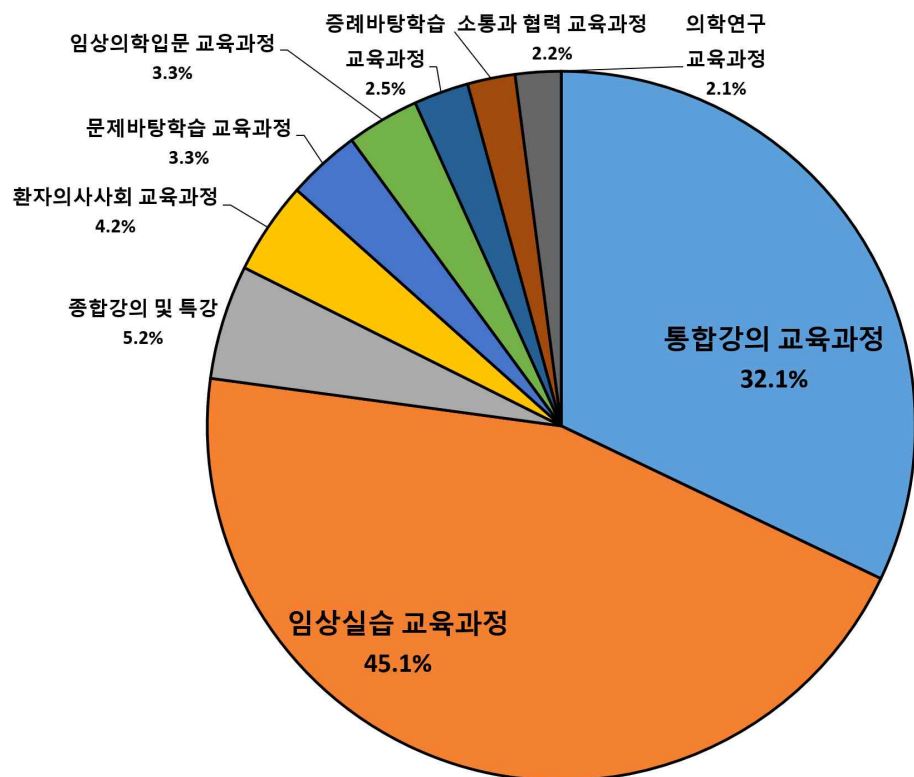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통합강의 (의학총론)		통합강의 (의학각론)		임상실습			총합강의 및 특강
의료면담 1,2,3 (Medical Communication 1,2,3)		임상의학입문 1,2 (ICM, 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1,2)					
환자의사사회 1,2,3,4,5 (PDS, Patient-Doctor-Society 1,2,3,4,5)				환자의사사회 6 (PDS, Patient-Doctor-Society 6)			
문제바탕학습 1,2,3,4 (PBL, Problem-Based Learning 1,2,3,4)				증례바탕학습 1,2,3 (CBL, Case-Based Learning 1,2,3)			
의학연구 3 (Medical Research Practice 3)					근거중심의학 (EBM, Evidence-Based Medicine)		

■ 학년별 수업시간

학년-학기		월	화	수	목	금
1-1	오전	통 합 강 의				
	오후		환자의사사회 1, 의료면담 1, 문제바탕학습 1	인체미세구조실습, 인체질병형태학실습	통합강의, 의학연구 3	
1-2	오전	통 합 강 의				
	오후	통합강의	의료면담 2, 문제바탕학습 2	통합강의	통합강의	
2-1	오전	통 합 강 의				
	오후	통합강의	의료면담3	통합강의, 문제바탕학습 3	통합강의	
2-2	오전	통 합 강 의				
	오후	통합강의	통합강의	통합강의, 문제바탕학습 4	통합강의	
3-1	오전	임 상 실 습				
	오후	임 상 실 습			증례바탕학습 1, 환자의사사회 5	
3-2	오전	임 상 실 습				
	오후	임 상 실 습			증례바탕학습 2, 근거중심의학	
4-1	오전	임 상 실 습				
	오후	임 상 실 습			증례바탕학습 3, 환자의사사회 6	
4-2	오전	총 합 강 의		치의학		총 합 강 의
	오후	총 합 강 의				

■ 교육과정별 수업시간 비율

교육과정	강의 시간	실습 시간	총 시간	비율(%)
통합강의 교육과정	1,312	72	1,384	32.1
임상실습 교육과정	0	1,944	1,944	45.1
종합강의 및 특강	225	0	225	5.2
환자의사사회 교육과정	182	0	182	4.2
문제바탕학습 교육과정	0	144	144	3.3
임상의학입문 교육과정	63	80	143	3.3
증례바탕학습 교육과정	0	108	108	2.5
소통과 협력 교육과정	54	40	94	2.2
의학연구 교육과정	0	90	90	2.1
계	1,836	2,478	4,314	100.0



통합강의 교육과정

1. 교육목표

- 일차진료의사(Primary Physician)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과학적 지식 배양

2. 과목분류

- 의학총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일부, 전공필수) : 계통별로 분류되는 의학각론의 학습에 앞서 생화학, 생리학, 조직학, 생애주기, 인체반응과 병태생리 및 감염학 등을 학습
- 의학각론 (1학년 2학기 일부, 2학년, 전공필수) : 의학총론의 지식을 바탕으로 계통별로 분류하여 학습

3. 학기당 설강 과목 및 학점

학년-학기	과목명	참여교실	시수		학점
			강의	실습	
1-1	의학생화학	생화학	54	0	3
	인체미세구조와 기능	생리학, 해부학	90	0	5
	인체미세구조실습	해부학	0	36	1
	인체반응 및 병태생리	마취통증의학, 면역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125	0	6.5
	인체질병형태학실습	병리학	0	36	1
	생애주기	해부학, 소아청소년과학, 정신과학, 재활의학	36	0	2
1-2	감염학	미생물학, 예방의학, 감염내과학, 호흡기내과학, 마취통증의학, 소아청소년과학, 영상의학, 정형외과학, 진단검사의학, 핵의학	119	0	6
	종양학	병리학, 예방의학, 감염내과학, 혈액종양내과학, 방사선종양학, 소아청소년과학, 핵의학	29	0	1.5
	소화기학	병리학, 소화기내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영상의학, 외과학, 이비인후과학	94	0	5
	심장혈관학	병리학, 심장내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영상의학, 외과학, 핵의학, 흉부외과학	74	0	4
	신장비뇨기학	병리학, 생리학, 신장내과학, 비뇨의학, 소아청소년과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핵의학	60	0	3
2-1	호흡기학, 알레르기-면역학, 내분비-대사학, 혈액학, 근육골격계학, 모체-태아-주산기의학, 생식의학		363	0	19.5
2-2	신경학, 정신의학, 피부 및 시정각학, 손상과 수술기의학		268	0	13.5

4. 평가

- 각 과목별, 교수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소통과 협력 교육과정

1. 교육목표

- 사람과 환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 함양
- 원활한 팀의료를 위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며,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전문적 의견을 서로 제시하면서 소통과 상호협력 할 수 있는 태도 체화

2. 과목분류

- 의료면담1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 임상행동의학: 사람과 환자에 대한 이해, 환자-의사관계
- 의료면담2 (1학년 2학기, 전공필수) : 의학면담, 정보수집, 의무기록작성
- 의료면담3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 환자교육, 어려운 환자 상담, 동료의료인과의 소통
- 임상의학입문2의 의료면담실습 (2학년 2학기, 전공필수) : 진료면담의 실제

3. 학기당 설강 과목 및 학점

학년-학기	과목명	참여교실	시수		학점
			강의	실습	
1-1	의료면담1	정신과학 외	18	0	1
1-2	의료면담2	소화기내과학 외	18	0	1
2-1	의료면담3	혈액종양내과학 외	18	0	1
2-2	임상의학입문2 중 의료면담실습	의료면담소위원회 외		40	

Phase1	Phase2	Phase3			Phase4
의예과 2학년 1학기	의학과 1학년 1학기	의학과 1학년 2학기	의학과 2학년 1학기	의학과 2학년 2학기	의학과 3,4학년
입문과정	준비과정			실습과정	실행과정
기본의료면담	의료면담1	의료면담2	의료면담3	임상의학입문2	임상실습

4. 평가

- 각 과목별, 교수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환자의사사회(PDS) 교육과정

1. 교육목표

- 일차진료의사(Primary Physician)로서 필요한 개인계발과 사회 관련 영역의 학습
- 환자-의사-사회의 관련분야 및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분야 학습

2. 과목분류

- 환자의사사회 1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 의료윤리, 전문직업성, 의사와 사회를 중심으로 강의됨.
- 환자의사사회 2 (1학년 2학기, 전공필수) : 건강과 질병, 역학과 응용을 중심으로 강의됨.
- 환자의사사회 3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 환경과 건강을 중심으로 강의됨.
- 환자의사사회 4 (2학년 2학기, 전공필수) :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및 보건의약 관계법규를 중심으로 강의됨.
- 환자의사사회 5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 법의학,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강의됨.
- 환자의사사회 6 (4학년 1학기, 전공필수) : 의료인문학(인문학, 생활습관의학 등), 성찰과 자기계발을 중심으로 강의됨.

3. 학기당 설강과목 및 학점

학년-학기	과목명	참여교실	시수		학점
			강의	실습	
1-1	환자의사사회 1	예방의학, 마취통증의학	20	0	1
1-2	환자의사사회 2	예방의학	40	2	0
2-1	환자의사사회 3	예방의학	40	0	2
2-2	환자의사사회 4	예방의학	44	0	2
3-1	환자의사사회 5	법의학	20	0	1
4-1	환자의사사회 6	법의학	18	0	1

4. 평가

- 각 과목별 교수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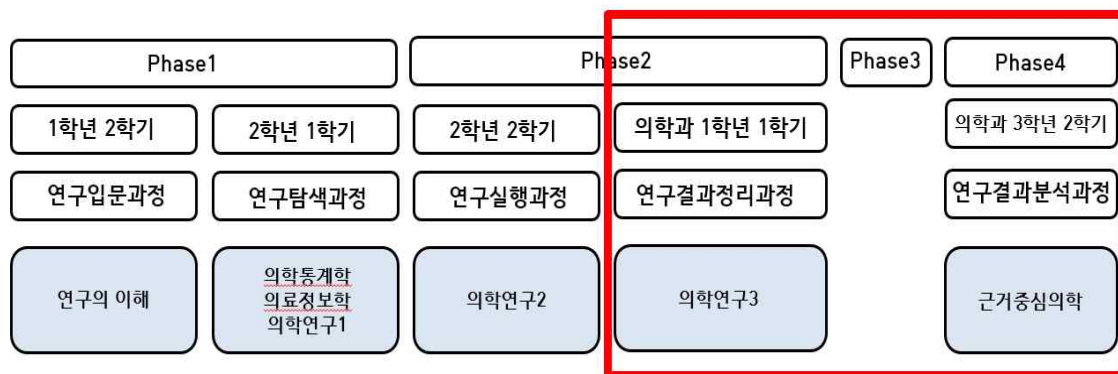
의학연구 교육과정

1. 교육목표

- 전문적인 연구보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의 기본적인 과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관심과 흥미, 호기심 등을 갖도록 유도하여 연구마인드 함양
- 과학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근거로 연구를 계획하고 연구결과를 이해하는 능력,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함양

2. 과목분류

- 연구의 이해 (의예과 1학년 2학기, 기초필수) : 의학연구의 정의와 방법, 연구결과물 등을 이해
- 의학통계학 (의예과 2학년 1학기, 기초필수) : 의학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의학연구방법론의 기초를 이해하고 실행
- 의료정보학 (의예과 2학년 1학기, 기초필수) : 프로그래밍, 의료빅데이터,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의 이해와 산업에 활용 사례
- 의학연구 1 (의예과 2학년 1학기, 기초필수) : 의학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실제 의학연구를 계획과 진행 참여
- 의학연구 2 (의예과 2학년 2학기, 기초필수) : 실제로 의학연구를 수행하면서 의학연구의 과정 학습, 중간결과 발표
- 의학연구 3 (의학과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 실제로 진행한 의학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 근거중심의학 (의학과 3학년 2학기, 전공필수) : 기존의 체계적인 연구(문헌, 임상시험)에서 증명된 과학적 결과를 기반으로 사고하고 이를 임상적인 의사결정에 활용



[그림] 의학연구 교육과정 구성

3. 학기당 설강 과목 및 학점

학년-학기		과목명	참여교실	시수		학점
				강의	실습	
의예 과	1-2	연구의 이해	약리학, 진단검사의학, 법의학	30	0	2
	2-1	의학통계학	예방의학	45	0	3
		의료정보학	의료정보학	30	0	2
		의학연구 1	기초, 임상 의 연구지도교수	0	15	0.5
	2-2	의학연구 2		0	15	0.5
의학 과	1-1	의학연구 3		0	54	1.5
	3-2	근거중심의학	의료정보학	0	36	1

4.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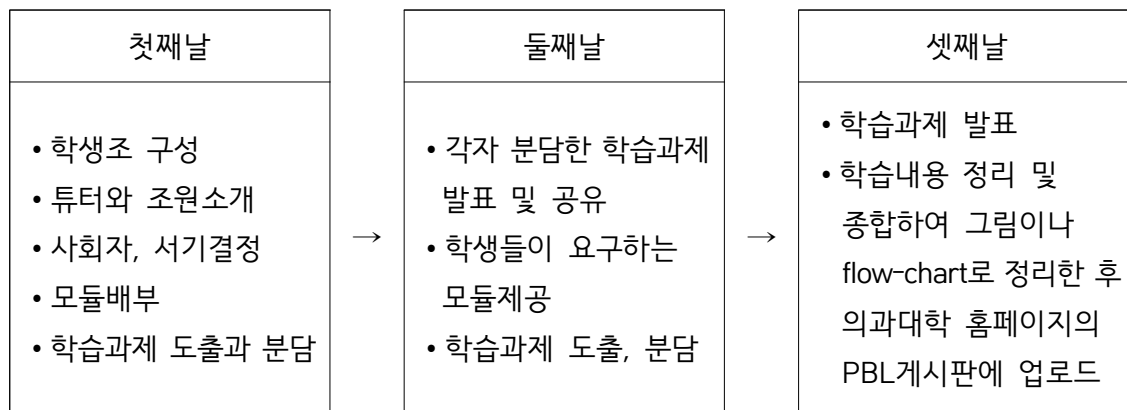
- 연구의 이해, 의학통계학, 의료정보학, 근거중심의학은 절대 또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며, 의학연구 1,2,3은 Pass / Fail로 평가함.
- 구체적인 평가사항은 각 과목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문제바탕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교육과정

1. 교육목표

- 의학총론과 각론 등 의학교육 전 분야에 걸친 사례를 통한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비판적 사고력 등 상위인지능력 향상

2. 진행방법



3. 학기당 설강 과목 및 학점

학년-학기	과목명	시수		학점
		강의	실습	
1-1	문제바탕학습 1	0	36	1
1-2	문제바탕학습 2	0	36	1
2-1	문제바탕학습 3	0	36	1
2-2	문제바탕학습 4	0	36	1

4. 평가

- 모듈별로 출석, 태도 등 튜터용 평가지를 통한 평가
- 성적은 Pass / Fail로 평가

■ 임상의학입문 교육과정

1. 교육목표

- 일차진료의사(Primary Physician)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과학적 지식 배양
- 환자 진료에 필요한 병력 청취와 진찰, 검사, 치료 술기 등을 학습

2. 과목분류

- 임상의학입문 1 (2학년 2학기, 전공필수) : 신체진찰, 기본임상술기, 진단검사, 처치 등을 학습
- 임상의학입문 2 (2학년 2학기, 전공필수) : 임상술기, 환자면담 중심 조별 실습

3. 학기당 설강 과목 및 학점

학년-학기	과목명	참여교실	시수		학점
			강의	실습	
2-2	임상의학입문 1	마취통증의학, 흉부외과학, 진단검사의학, 소아청소년과학, 소화기내과학, 비뇨의학, 산부인과학, 영상의학, 신경과학, 외과학, 정형외과학, 성형외과학, 호흡기내과학, 이비인후과학, 감염내과학, 정신과학, 응급의학, 안과학, 심장내과학	63	0	3
	임상의학입문 2	임상표현 48개의 해당 교실 (의료면담 실습 40시간 포함)	0	120	3

4. 평가

- 각 과목별, 교수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증례바탕학습(Case-Based Learning, CBL) 교육과정

1. 교육목표

- 환자 증례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술기 등을 명료화
- 사례문제를 분석하고, 토론 및 평가하는 역량 강화

2. 과목분류

- 증례바탕학습 1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
- 증례바탕학습 2 (3학년 2학기, 전공필수) :
- 증례바탕학습 3 (4학년 1학기, 전공필수) :
 - 기본진료수행지침(KAMC 한국외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임상표현 48개 중심으로 환자진료과정 학습
 - 임상표현별 환자진료에 필요한 병력청취, 신체진찰 외에 임상추론, 환자중심 진료, 환자안전 을 고려한 환자진료 과정을 학습

3. 학기당 설강과목 및 학점

학년-학기	과목명	시수		학점
		강의	실습	
3-1	증례바탕학습 1	0	36	1
3-2	증례바탕학습 2	0	36	1
4-1	증례바탕학습 3	0	36	1

4. 평가

- 각 과목별, 교수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임상실습 교육과정

1. 교육목표

- 1, 2학년 과정 중 획득한 의학지식과 임상술기를 바탕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습
- 3학년은 기간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진단방사선과, 신경과 등), 4학년 1학기는 특과 및 심화선택 실습이 포함됨.

2. 학기당 설강 과목 및 학점

학년-학기	과목명	시수		학점
		강의	실습	
3-1	내과학1 (4주), 산부인과학 (4주), 소아청소년과학 (4주), 정신과학 (4주), 신경과학 (1주), 영상의학 (1주)	0	648	18
3-2	내과학2 (6주), 외과학1 (3주), 흉부외과학 (1주), 정형외과학 (1주), 신경외과학 (1주), 성형외과학 (1주), 비뇨기과학 (1주), 피부과학 (1주), 안과학 (1주), 이비인후과학 (1주), 지역사회의학 (1주)	0	648	18
4-1	내과학3 (4주), 외과학2 (3주), 응급의학 (2주), 중환자의학 (1주), 진단검사의학 (1주), 마취통증의학 (1주), 방사선종양학 (1주), 재활의학 (1주), 핵의학 (1주), 가정의학 (1주), 심화선택실습 (2주)	0	648	18

3. 평가

- 과목별로 출석, 태도, 리포트, 시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

2021학년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교육과정

과목명	학기	1학기																		2학기																		수업시간		
	분기	1Q									2Q									3Q									4Q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강의	실습	합계
의학생화학																																				54	0	54		
인체미세구조와기능																																				90	0	90		
인체반응 및 병태생리																																				125	0	125		
생애주기																																				36	0	36		
인체미세구조실습																																				0	36	36		
인체질병형태학실습																																				0	36	36		
환자의사사회 1																																				20	0	20		
문제바탕학습 1																																				0	36	36		
의학연구 3																																				0	54	54		
의료면담 1																																				18	0	18		
감염학																																				119	0	119		
종양학																																				29	0	29		
소화기학																																				94	0	94		
심장혈관학																																				74	0	74		
신장비뇨기학																																				60	0	60		
환자의사사회 2																																				40	0	40		
문제바탕학습 2																																				0	36	36		
의료면담 2																																				18	0	18		

2022학년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2학년 교육과정

과목명	학기	1학기																		2학기																		수업시간		
	분기	1Q									2Q									3Q									4Q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강의	실습	합계
호흡기학																																				72	0	72		
알레르기면역학																																				28	0	28		
내분비-대사학																																				54	0	54		
혈액학																																				46	0	46		
근육골격계학																																				47	0	47		
모체-태아주산기의학																																				54	0	54		
생식의학																																				62	0	62		
의료면담 3																																				18	0	18		
환자의사사회 3																																				40	0	40		
문제바탕학습 3																																				0	36	36		
환자의사사회 4																																				44	0	44		
신경학																																				76	0	76		
정신의학																																				68	0	68		
피부 및 시정각학																																				62	0	62		
손상과 수술기의학																																				62	0	62		
임상의학입문 1																																				63	0	63		
임상의학입문 2																																				0	120	120		
문제바탕학습 4																																				0	36	36		



학사 안내

- 홈페이지 및 오아시스 안내
- 수강신청
- 이수학점 및 방법 안내
- 학생 강의평가
- 학생 장학금제도, 학자금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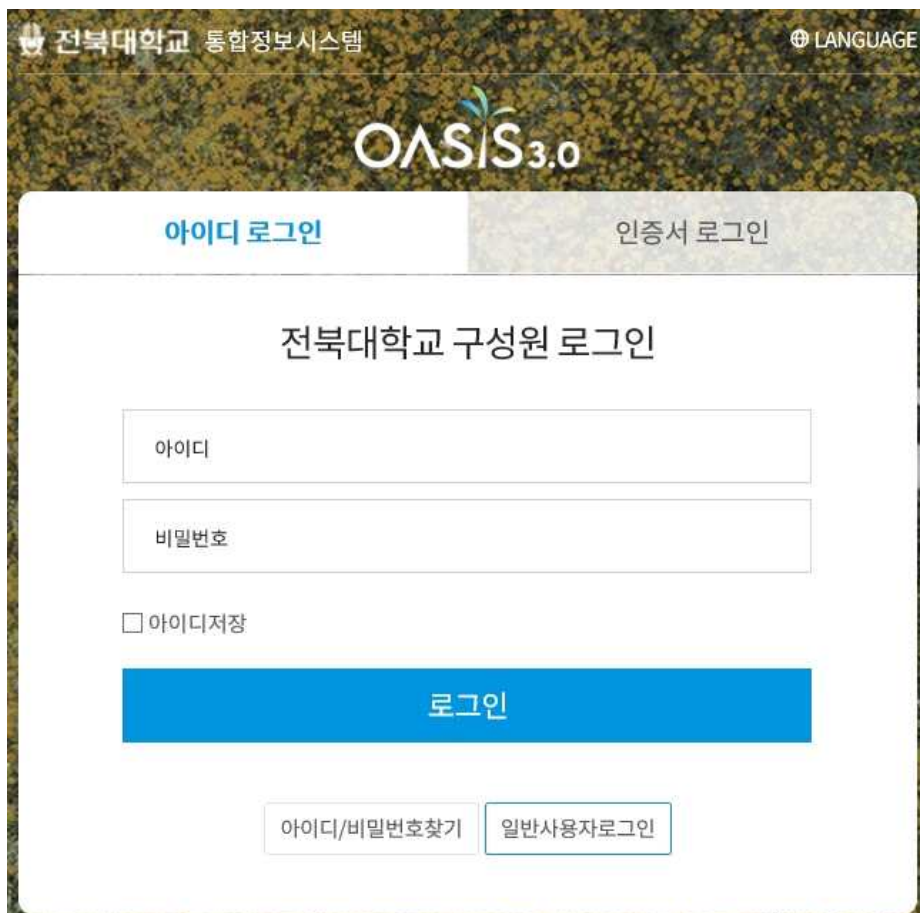
홈페이지 및 오아시스 안내

● 홈페이지

1.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jbnu.ac.kr>)
2.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http://med.jbnu.ac.kr>)

● 오아시스 (종합정보시스템 전북대학교 포털)

1.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http://med.jbnu.ac.kr>) 상단 메뉴 중 ‘오아시스’ 선택
2. 최초 로그인할 때 아이디는 학번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3. 최초 로그인 후 비밀번호 변경할 것



The screenshot shows the OASIS 3.0 login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header with the JBNU logo and '통합정보시스템'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n the left, and a 'LANGUAGE' selector on the right. The main title 'OASIS 3.0' is centered. Below the title, there are two tabs: '아이디 로그인' (ID Login) and '인증서 로그인' (Certificate Login). The '아이디 로그인' tab is active. The login form is titled '전북대학교 구성원 로그인' (JBNU Member Login). It contains two input fields: '아이디' (ID) and '비밀번호' (Password). Below these fields is a checkbox labeled '아이디저장' (Save ID). A large blue button labeled '로그인' (Login) is positioned below the checkbox. At the bottom of the form, there are two buttons: '아이디/비밀번호찾기' (Find ID/Password) and '일반사용자로그인' (General User Login).

수강신청

1. 수강편람에 있는 전공필수과목 설강 과목표를 참조하여 오아시스에서 신청
 - 전공필수과목 : 행정실에서 일괄 수강 신청함.(본인이 누락된 수강신청 과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교육과정 개편으로 2021학년도 의학과 1학년 학생부터 전공선택과목 폐지

2. 시간표 공고

-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s://med.jbnu.ac.kr>) 행정지원-공지사항-학생공지

공지사항

분류 학생 | 작성일 2021.02.08 | 수정일 2021.02.08 | 작성자 의과대학 | 조회수 969

2021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의학과 수업시간표 공지

2021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의학과 수강편람과 수업시간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수강신청 및 수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강일 : 2021. 3. 2.(화)
2. 수업운영방안 : 비대면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실험실습소규모 12개 교과목은 대면수업
3. 심화선택과목 : 수강편람 참조
4. 강의계획서 입력 : 2. 8.(월) 09:00 ~ 2. 16.(화) 18:00까지 ※ 강의계획서 정시 입력은 교수업적평가(교육활동)에 반영되는 평가항목임
5. 수강신청 : 2학년 심화선택의학 교과목만 개인별로 수강신청합니다.
 - 수강신청기간 : 2. 18.(목) 09:00 ~ 2. 19.(금) 18:00
 - 수강신청변경기간 : 3. 2.(화) 09:00 ~ 3. 8.(월) 18:00

※ 1~4학년 전공필수 및 3학년 심화선택의학 교과목은 행정실에서 일괄 수강신청합니다. 학생은 개강일에 오아시스에서 본인 수강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누락된 과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첨부파일

- 📎 2021학년도 1학기 수강편람(최종).hwp
- 📎 2021학년도 1학기 의학과 수업시간표(공지용)_210208.xlsx

이수학점 및 방법 안내

1. 교육과정 이수학점 (2021학년도 의학과 1학년부터 적용)

구분	졸업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비고
			심화선택의학	계	
학점	165학점 이상	165학점			

2. 성적처리

Pass or Fail로만 성적처리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과목

– 전공필수과목: 의학연구 1~3, 문제바탕학습 1~4

◎ 유급, 휴학 및 제적

전북대학교 학칙(2021.02.01. 개정)

1. 유급 (전북대학교 학칙 제77조 ⑤항)

제77조(졸업 및 수료학점)

⑤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및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유급되고, 당해 학년의 모든 전공과목을 재이수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유급되기 전 취득한 전공과목의 성적을 인정하되, 유급된 당해 학년 중에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전공과목을 전부 재이수 하여야 하며, 의과대학 의학과는 재학 예정인 학년에 개설된 모든 전공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15.02.27, 21.02.01)

1. 제3항에 불구하고 각 학년에 배정된 전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15.02.27)
2. 전 과목 취득성적의 평점 평균이 1.87 미만인 경우(15.02.27, 16.11.24, 18.02.28)
3. 당해 학년에 배정된 총 학점의 3분의 1 이상이 성적 등급 C⁰ 미만인 경우(단,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학과는 제외) (15.02.27, 21.02.01.)
4. 당해 학년에 배정된 모든 전공필수과목 학점의 3분의 1 이상이 성적 등급 C⁰ 미만인 경우(다만, 성적 등급이 없는 전공필수과목은 제외하며, 의과대학 의학과에 한함)(신설 21.02.01.)

2. 재학연한 (전북대학교 학칙 제39조)

제39조(재학 연한)

-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 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 한다. (13.02.26)
- ② 휴학 기간과 시간제학생 등록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항 신설 03.02.26)

3. 휴학 (전북대학교 학칙 제53조)

제53조(휴학절차)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3.05.27, 20.01.07)
- ② 병역복무를 위하여 입영하는 자는 입영 전에 학장에게 신고하고 입영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을 위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3.02.26, 14.06.23, 20.01.07)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임신·출산·육아 및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한 휴학은 제외한다. (신설 13.05.27, 20.05.19)

4. 당연제적 (전북대학교 학칙 제57조)

제57조(당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학장의 신청에 의거 제적한다.

1. 복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3.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5. 재학 중 통산하여 성적경고를 4회 받은 자
6.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7.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학생 강의평가

학생강의평가는 학생들을 통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수업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모든 교수와 교과목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실시한다.

■ 평가대상: 수업참여 교수, 모든 과목

■ 평가방법: 오아시스(Oasis), 개인 e-mail

- 교수평가: 주별로 수업한 모든 교수에 대하여 매주 주말에 평가 실시(교수당 4문항)
- 과목평가: 과목이 종료된 시점에 교과목에 대한 평가 실시(과목당 6문항)
- 과목별 열린문항(주관식문항)과 임상실습 학생강의평가는 개인 e-mail을 통해 실시

■ 평가시기

- 교수평가: 매주 주말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실시
- 과목평가: 과목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일주일간 실시

■ 특이사항

- 학생이 평가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 교수평가와 과목평가를 포함한 모든 학생강의평가에 대하여 1회 이상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학년 말 성적열람이 불가능하므로 꼭 참여해야 한다.

학생 장학금제도

□ 개요

-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내·교외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 장학금 선발은 의학과장과 각 학년 주임교수(학년 당 2명의 교수로 구성)들의 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 교내 장학금

- 성적장학금 : 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처리하며, 2종과 5종으로 구성
- * 2종: 수업료2의 전액 면제, 5종: 수업료1의 전액 면제

□ 교외 장학금

1. 동창회 장학금

- 전북의대·의전원동문회의 장학재단을 통해 지급
- 1인 100~200만원을 1·2학기로 나눠 지급(지정 장학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음)
- 장학재단의 추천으로 별도로 정함

2.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 기탁 장학금

- 의대·의전원 동문, 재직교수, 의과대학 교실이 지급하는 장학금
- 의학과장 및 학년 주임교수들의 결정

3. 기타 장학금

- 병원이나 외부 장학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선발은 의학과장 및 학년 주임교수들이 결정

※ 모든 장학금 관련은 의학과장, 각 학년주임교수 및 개인 지도교수와 수시로 상의함

장학금, 학자금대출 안내

■ 장학금 안내

1. 유의사항

- 가.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학적의 학생(재학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은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권장
- ※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12.29.화)에 한국장학재단사이트(www.kosaf.go.kr)에서 신청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2021년 2월말~3월초 예정)에 신청 가능
- 나. 모든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준수하고, 국가장학금 선발기준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함(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고, 재학 중 1회에 한하여만 2차에 신청 가능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 수혜 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은 국가장학금 및 교내 돈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감면 받을 수도 있으니 국가장학금 반드시 신청 바람(7~8구간은 장학금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학생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음)

구분	심사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하여 80점 이상 획득
	- C학점 경고제 : 1~3분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및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 : C학점(70/100점)이상 적용

다. 교내장학생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

- 수업연한 이내 : 8학기(의·치학계열 예과 4학기)
- ※ 다만, 국가장학금의 경우, 수업연한 제한 없이 8번(의·치학계열 예과 4번)까지 지급 가능
- 성적기준 : 계절학기(특별학기 포함) 성적 제외
- ※ 다만, 국가장학금의 경우, 재이수전 성적을 반영하되, 한국장학재단 성적미달로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 계절학기(특별학기 포함)를 반영하여 지급 가능함.

라. 모든 학생은 수시로 장학 정보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교내·외 장학생 공개선발 관련 정보 확인(수시 확인 필요)
- ※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 ‘교내공지’ - ‘더보기’ - ‘장학’ 에서 수시 확인
- 교내장학금 계속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침 및 성적기준 등 확인
- ※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규정및지침’ - ‘지침’ - ‘전북대학교 장학금관리지침’ 또는 학과의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기준 참고

마. 모든 학생은 등록금감면 장학금의 경우, 총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여러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순으로 우선 지급함.

- 여러 학기에 걸쳐 계속 지급하는 장학금(국가우수, 외부장학)→ 국가장학금→외부장학금 →교내장학금(돈움)→교내장학금(성적)→교내장학금(목적)

※ 등록금감면이 아닌 생활비장학금, 근로장학금 및 포상장학금은 총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 지급 가능

바. 문의처 : 학생과 063-270-4089 및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

2. 등록금(수업료) 및 등록금 감면률에 따른 장학금 종류

가. '20학년도 수업료1 및 수업료2 금액(등록금 = 수업료, 수업료 = 수업료1 + 수업료2)

(단위 : 원)

계열	수업료1	수업료2	계열	수업료1	수업료2
인문·사회	375,000	1,286,000	자연	384,000	1,750,000
공학	410,000	1,888,000	예술	410,000	1,956,000
의·치·의예	489,000	2,675,000	수의예	384,000	1,750,000

나. 등록금 감면률에 따른 장학금 종류 (등록금=수업료, 수업료 = 수업료1 + 수업료2)

- 1종장학금 : 등록금 전액 면제
- 2종장학금 : 수업료2의 전액 면제
- 3종장학금 : 수업료2의 50% 면제
- 4종장학금 : 수업료2의 25% 면제
- 5종장학금 : 수업료1의 전액 면제

3. 교내장학금(신입생) - 대학자체 선발 장학금

가. 최초합격자만 대상으로 학교에서 선발 (별도 신청하지 않음)

나. 장학생 선발자에 한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명과 감면액 표기

다. 아래의 장학금 대상자도 국가장학금을 가급적 신청

장학금 명칭	대상자	장학내용	제출 서류
수능성적 우수장학	· 최초합격자 중 아래 수능 성적 기준을 충족한자를 대상으로 선발 - 인문계열: 국어, 영어, 사탐 2과목 합이 6등급 이내 - 자연계열: 수학 가, 과탐(2과목 평균) 합이 4등급 이내 ※ 제외: 의대, 치대, 수의대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선발 (단, 입학정원이 80명 이상인 경우 5% 이내 선발, 소수점 이하 절상) · 계속 유지 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63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미달 시 다음학기 1회 중단,	· 매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 매학기 학비보조금 160만원 · 재학 시 생활관 우선 배정 및 생활관비 일부 지원(40만원) · 재학 중 해외파견 우선 선발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시 2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직전학기 및 당해학기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63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직전학기 성적 미달시 장학생	해당없음

장학금 명칭	대상자	장학내용	제출 서류
	누적 2회 시 장학생 자격 박탈) - 계열이나 소속대학 이적 시 지급 중지	자격 박탈)	
전형성적 우수장학	• 최초 합격자 중 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 등록학생의 43%까지 선발	• 등록금전액~일부 (1학기)	해당없음
고교장 추천장학	• 최초 합격자 중 수능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중 입학관리과 추천자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 수업료2 (1년)	해당없음
돌움장학	• 국가장학금 선발자 중 소득분위 반영 선발 ※ (재학생) - 4~8분위는 2.75 이상 - C학점 경고제: 1~3분위는 직전학기 1.88~2.75 미만인 경우, 경고 및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 : 1.88 이상	• 등록금-국가장학금 차액	해당없음

4. 교내장학금(신입생) - 학생 신청에 의한 장학금

가. 학생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학교는 지급 의무 없음.

나. 아래의 장학금 신청자(기초수급자·차상위학생 포함)는 국가장학 2차 신청기간(`21년 2월초~3월초 예정)에 신청을 하고, 자비 등록한 후 추후 지급

다.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장학금명칭	대상자	제출서류 및 재학생 선발조건 (최근 1개월 이내 발행)	감면액
Family장학금	형제·자매·부모·부부가 우리대학 학부대학원 과정에 재적(휴학 포함)하는 신(편)입생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주소가 다른 경우 형제·자매·부모·부부 관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자매·부모·부부가 졸업,수료,수업연한 초과시 제외 ※ 입학 학기만 1회 지급	수업료2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본인·배우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발행, 1회만 발급가능한 서류임) ※ (재학생) 본인 및 배우자는 수업연한 및 직전학기 성적 관계없음 ※ (재학생) 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1.88 이상	등록금 전액
동행장학금	장애학생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1.88 이상	• 중증장애인: 등록금 전액 • 경증장애인: 수업료2
청운장학금	소년소녀가장	•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1.88 이상	등록금 전액
	보육시설퇴소자	• 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1.88 이상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1.88 이상	

장학금명칭	대상자	제출서류 및 재학생 선발조건 (최근 1개월 이내 발행)	감면액
결혼이민자 장학금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수업료2
체육특기자 장학금	체육특기자 학생	- 선발통보서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등록금 전액 ~ 수업료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 1~2 서식)

라. 제출 기간 : 1.11.(월) ~ 1.29(금) 09:00~18:00 (공휴일,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또는 충원 합격자

- 해당 서류와 함께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를 장학팀을 방문하여 2월 중 제출
- 이 경우 등록기간 내에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21. 5월경 계좌로 입금

마. 신청서 제출 방법

- 방문제출 : 학생과 장학팀 (법과대학 본관 2층, 평일 9시~6시, 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
- 등기우편 제출 :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학생과 장학팀

※ 원본 서류 확인을 위하여 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5. 교내장학금(재학생) 세부내용(자세한 내용은 '전북대학교 장학금 관리 지침' 참조)

장학명	대 상 자	장학 내용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 공인외국어 성적(2학년 1학기부터 포함)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2학년 1학기부터 공인외국어 성적(일부 학과 제외) ·등록금 전액~일부
	돈음(경제곤란)장학금	국가장학금 선발자 중 소득분위 반영 선발 ※ (재학생) - 4~8분위는 2.75 이상 - C학점 경고제 : 1~3분위는 직전학기 1.88~2.75 미만인 경우, 경고 및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 : 1.88 이상 ※ (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정규학기 성적미달로 수혜 거절 시 계절학기나 특별학기 성적도 인정 ·등록금-국가장학금 차액
	어학능력향상장학금 (공인외국어 성적우수자)	입학 후 취득한 공인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성적이 우수한 자 (영어 전공 등 일부 학과 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등록금 일부
	동행장학금 (장애학생)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1.88 이상 ·중증 장애인: 등록금 전액 ·경증 장애인: 수업료2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본인 및 배우자는 수업연한 및 직전학기 성적 관계없음, 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1.88 이상) 등록금 전액
	동서화합 장학금 (교류학생)	본교 재학생으로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전액

장 학 명	대 상 자	장 학 내 용
학교사랑 장학금	대학신문방송사 기자, 학생홍보대사, 모험대사, 학생회임원 등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등록금 일부
알찬장학금	통합경력관리프로그램 「큰사람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년에 맞는 경력벨트를 취득한 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1학년: 수업료1 ·2~4학년:포상금
결혼이민자 장학금	결혼이민자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등록금 일부
청운장학금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퇴소자, 탈북자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1.88 이상	·등록금 전액
충장학금	학군단 우수학생(4명 이내) 및 여자 후보학생	등록금 일부
체육특기자 장학금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	등록금 전액~일부
디딤장학금	학부·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일반대학원에 진학예정자 ※ (재학생) 성적 관계 없음	·등록금 일부
미래장학금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아니지만 경제곤란자 ※ (재학생) 성적 관계 없음	·등록금 일부
창의장학금	성적우수, 사회 각 부문 또는 대학(과)발전 기여, 자기계발·연구실적 또는 봉사활동 우수자로 학장 추천자	등록금 일부
히포크라테스 장학금	의과대학, 치과대학 학업성적 우수자	등록금 일부
프런티어 장학금	특성화캠퍼스 및 새만금프런티어캠퍼스 학업성적 우수자	등록금 일부
학비감면 근로장학금	해당 단과대학 및 행정조직 근로학생	등록금 일부
가치향상 장학금	각종 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학교 명예를 현저히 높인 자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포상금
세계화 장학금	전공 관련 해외연수 프로그램 공모	포상금 국제협력부 문의
	세계교육기행 공모, 해외봉사활동 공모	포상금 학생과 학생지원팀 문의
복수학위 장학금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선발자로서 교류대학으로부터 수학허가를 받은 자	국제협력부 문의
외국인 장학금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	국제협력부 문의

6. 한국장학재단 시행 장학금

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상세 내역 참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과 063-270-4089)

- 1)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학적의 학생(재학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은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권장
※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12.29.화)에 한국장학재단사이트(www.kosaf.go.kr)에서 신청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2021년 2월말~3월초 예정)에 신청 가능
- 2)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고,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 가능
- 2차 신청기간 : `21년 2월 초 ~ 3월 초 예정 (장학재단에 문의 1599-2000)

※ 신입생은 우선 자비 등록 후, 추후 소득분위가 확정되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개인계좌에 환불 지급함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 후 신청

다. 국가장학금 I 유형

구분	심사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하여 80점 이상 획득
	- C학점 경고제: 1~3분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및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 C학점(70/100점)이상 적용

- 1) 지원대상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2) 지원금액 : 소득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소득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1분위	260만원	520만원
2분위		
3분위		
4분위	195만원	390만원
5분위	184만원	368만원
6분위		
7분위	60만원	120만원
8분위	33.7만원	67.5만원

라.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1) 지원대상 : 소득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무관)
- 2) 지원금액: 소득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소득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3분위	260만원	520만원
4분위~8분위	225만원	450만원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국가장학금” 우선 지원(중복수혜 불가)

마.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대학에서 수립 및 지급

바. 국가장학금 II 유형 장학금

○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에게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

사. 국가우수장학금 (문의: 학생과 063-270-4089)

1) 대통령과학장학금

- 신청자격 : `21년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에 입학 예정(확정)인 자로 석차등급 충족자(고교 1-3학년 수학, 과학교과의 성적기준 총 과목수 10과목 이상 또는 이수단위합계가 24단위 이상으로 둘 중 한가지 조건에 충족, 일반고 석차 3등급이내, 과학고 4등급이내)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온라인 신청(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천문등), 정보 6개 분야 중 본인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1개 분야 신청)

- 신청 기간 : **2021. 3월초 예정**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학업장려비(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학기당 250만원)+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선발방법 : 서류심사(1단계)→인·적성검사→심층면접(2단계)
- ※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성 기준 선발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 직전학기 평점 3.5/4.5이상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의무종사 : 졸업 후 이공계 산·학·연에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함(의무종사하지 않는 자는 환수대상)

2)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신청자격 : `21년도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로 입학(예정)자
 - 수능우수유형 :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아래의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 ① 수학영역(가·나형) 3등급이내
 - ② 과학탐구영역 2개 과목 2등급이내 또는 과학II 2등급이내 + 나머지 3등급이내
 - ※ 재단 기준에 따라 학생 신청
- 수시우수유형 : 당해연도('21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학과(부) 수시 입학생 중 · 고교 성적 기준 충족지수에 따라 대학별 배정인원 중 대학추천을 받은자, 이공계 대학원 진학 또는 해당 산·학·연 종사 예정인 자로서 미래성장동력 분야 전공자 우선 선발
 - ※ 재단 기준에 따라 학생 신청 없이 대학에서 선발
- 신청시기
 - 수능우수유형 : `21. 4월 예정
 - 수시우수유형 : `21. 3월 예정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만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선발방법 : ● 수능우수유형 : 온라인 개별신청
 - 수시우수유형 : 대학추천자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서류심사(1단계) → 대학 심사 및 추천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 직전학기 평점 3.5/4.5이상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의무종사 : 졸업 후 이공계 산·학·연에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함 (의무종사하지 않는 자는 환수대상)

3) 인문100년 장학금

- 전공탐색유형 :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의 신입생 중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신입생
- 전공확립유형 :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의 3학년 학생 중 대학 자체 심사기준에 의하여 추천 선발
 - 총장 추천서, 학업계획서 지정된 파일 형식으로 신청기간 내에 인문/사회/교육등 3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선택 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생활비200만원+기초생활수급자만 학기당 200만원 추가지원('20년기준)

- 선발방법 : 대학자체 선발기준에 의하여 추천 서류심사(1단계)→대학심사 및 추천
※ 인문사회분야에서의 발전가능성 및 우수성을 평가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 직전학기 평점 3.5/4.5이상 또는 백분위 87점이상
- 신청시기 : `21. 3월 예정
※ 재단 기준에 따라 학생 신청 없이 대학에서 선발

아. 국가근로장학금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학생과 063-270-4089)

1)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근로장학금 수혜 불가

※ 국가근로장학금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21년 2월 말~3월 초)에 한국장학재단사이트에서 신청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및 모바일 어플

3) 신청기간 : `21. 2월 말 ~ 3월 초(예정)

4) 선발과정

- (한국장학재단) 선발 기본 요건 충족(소득분위 8분위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
- (대학) 자체선발기준 (저소득층 우대)
- (각 근로지) 최종 선발 (자체 선발 기준과 전문성,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신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미적용

5) 국가근로 유형 및 시급 (`20.2학기 기준, 근무시간 변동 가능)

구분	근무시간	시급	최대지급액
교내	월35시간	9,000	월315,000
장애대학생도우미유형	월60시간	9,000	월540,000
교외	월50시간	11,150	월557,500
청소년교육지원	연300시간	11,150	연3,345,000

■ 학자금 대출 안내

1. 학자금 대출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과 063-270-4089)

1)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어플 신청

- 대출승인 이후 '지급실행'을 하여야 실제 등록금이 납부되오니 유의 바람.
-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편으로 소득분위 산정에 약 4주가 소요됨에 따라 학자금대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4주 전까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바람.

2) 지원자격

- 공통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1.88/4.5이상)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 공통 조건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적용 제외
※ 성적 미달자는 재학중 2회 특별추천 가능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튼튼학자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1~8분위 대상인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일반학자금** : 소득 제한 없음, 만 55세 이하의 학부생

3) 대출 금액 한도

- 든든학자금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일반학자금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4) 대출 금리 : 1.85%(`20년 2학기 기준)

2. 농어촌 학자금 용자(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과 063-270-4089)

1)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신청

2) 신청 기간(신입생군)

- (1차) `21. 1월 4일 ~ 1월 13일 18:00까지
- (2차) `21. 2월 8일 ~ 2월 19일 18:00까지

3)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용자 지원 대상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70점/100점 만점 이상 (신입생군 적용 제외)

4) 용자 조건

- 용자액 한도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의료비 등은 용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용자 가능 횟수 : 정규학기 수
- 용자 이율 : 무이자

붙임 1. 목적장학금 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끝.

〈붙임 1〉

20 학년도 학기 목적장학금 신청서

소속	대학 : 학부(과) : 학년 : 학번 :		
성명			연락처 휴대폰 : E-mail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 점		신청자 계좌번호
Family 장학금	형제자매 성명	학번	학부(과)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점	연락처
동행 장학대상자	장애 유형	중증	보훈장학 유형
		경증	
자녀(V) 본인및배우자(V)			

전북대학교(선택: 청운,보훈,동행,결혼이민자,가치향상,Family)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증빙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 불임서류

- 청운장학금 :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 퇴소자, 탈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훈장학금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동행장학금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사본
- 결혼이민자장학금 :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전북대가치향상장학 :
 - 행정고시,기술고시,입법고시,법원행정고등고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공인노무사,관세사합격자
 - 기타 인재등용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에 신청 학비감면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붙임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전북대학교는 장학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제17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장학금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이증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증지원 받은 경우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지구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장애유형·등급, 계좌번호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정보 : 장학생 선발 시 제출한 신청서류 기재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신청 후 5년간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만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할합)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대학내 장애인 및 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관련 업무 담당 부서 및 기관				
제공·조회 목적	<table border="1"> <tr> <td>장학금 지원</td><td>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법령상 의무이행 등 </td></tr> <tr> <td>이종지원 확인</td><td> ■ 이종지원 판단 및 확인 </td></tr> </table>	장학금 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종지원 확인	■ 이종지원 판단 및 확인
장학금 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종지원 확인	■ 이종지원 판단 및 확인				
제공·조회 할 개인정보항목	<table border="1"> <tr> <td>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장애유형·등급, 계좌번호 ■ 장학금지원정보 : 장학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장학금지원 내역 정보 </td></tr> </table>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장애유형·등급, 계좌번호 ■ 장학금지원정보 : 장학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장학금지원 내역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장애유형·등급, 계좌번호 ■ 장학금지원정보 : 장학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장학금지원 내역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전북대학교 졸업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행장학금 신청시,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일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생활 안내

- 학생상담시스템
- 건강관리 지원
- 부당행위 관리체계
- 성적 이의 신청 절차
- 도서관 이용 안내
- 학생증·주차증·증명서·출입카드 발급 안내



학생상담시스템

학생 상담을 위한 교내·외 전문상담시설을 갖추고 있고, 평생지도교수제도, 학년담임교수제도, 동아리지도교수제도 등이 있으며, 서로 상호 협조하는 유기적 관계의 의과대학 통합학생상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생상담실인 멘토링하우스에서는 학업, 진로, 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한 대학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멘토링하우스 운영을 총괄하는 상담실장이 있고, 상담실장 및 상담교수 3인 이상(의학과장, 임상주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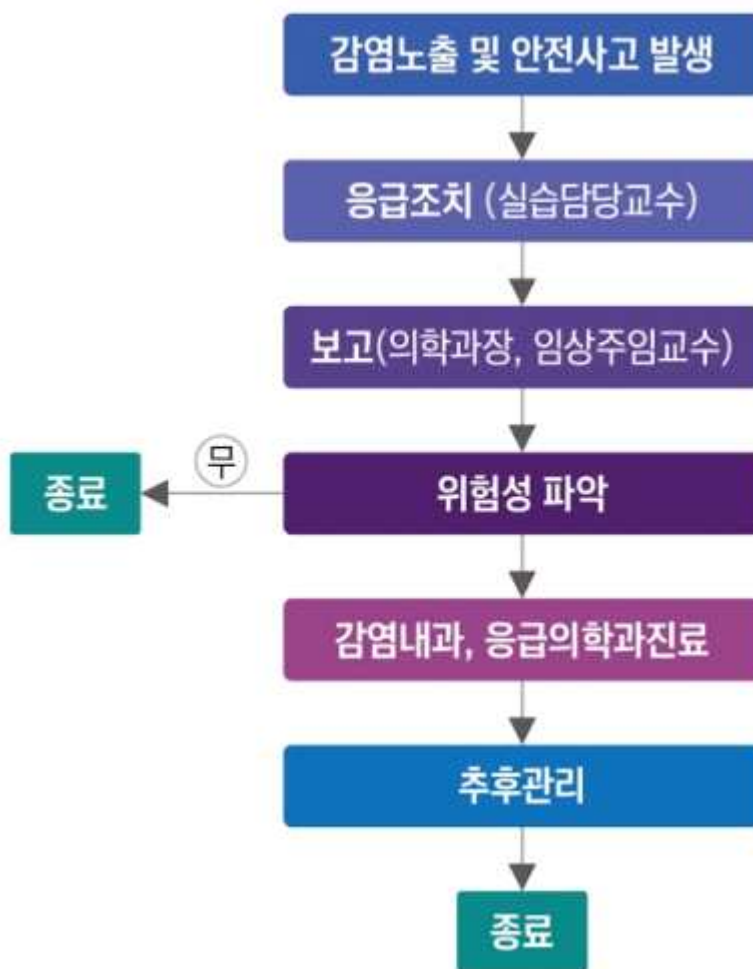
<학생상담 신청절차>



학생상담실(멘토링하우스)은 원활한 학생상담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행복드림센터’,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부협력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인 ‘맘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감염 및 환경위험에 노출된 경우, 안전사고 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안전사고 관리체계>



건강관리 지원

전북대학교 보건진료소, 전북대학교병원 및 외부 1, 2, 3차 의료기관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건진료소	전북대학교병원	외부의료기관 협약1차병원/전국 2,3차병원
• 일반진료 • 투약 및 소독처치 • 구강진료 • 체성분검사 • 혈액검사	• 학생의료공제회 • 건강검진 • 예방접종 • 부상 및 질병치료	• 학생의료공제회 • 부상 및 질병치료

전북대학교 보건진료소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진료실, 구강진료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체성분검사실, 물리치료실 등이 있다. 「전북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규정」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학생에게 적절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학교시설물을 사용 중에 또는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 활동 및 실험, 실습 등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을 위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KB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 경영자배상책임보험 >

■ 목적

우리대학교 학생들이 학생시설물을 사용 또는 관리하거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 및 실험, 실습 등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 학생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해 주는 보험.

■ 청구자격요건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학부 및 일반, 특수, 전문대학원생)
- 논문연구생(석사, 박사)으로 등록된 연구생
 - ※ 신입생은 입시합격자로 납입금을 납부한 등록자를 말함,

■ 청구범위 및 보상기간

-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청구
- 사고일로 부터 치료기간 180일 이내 보상

■ 보상하는 손해사항

- 대인 및 대물
- 전북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소유,사용 관리하는 학교 시설의 이용 및 수업활동, 실험,실습 등으로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중 학교측의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
- 수업활동의 범위 :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의 책임(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외 교육(현장학습 및 탐사), MT, OT,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을 포함,※ 다만, 학교측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됨.
- 구내,외치료비 담보 특별약관
- 전북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교내생활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및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의 책임(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외 교육(현장실습 및 탐사) MT, OT, 수학여행, 과외 활동으로 인한 사고를 당한 피해의 실비(치료)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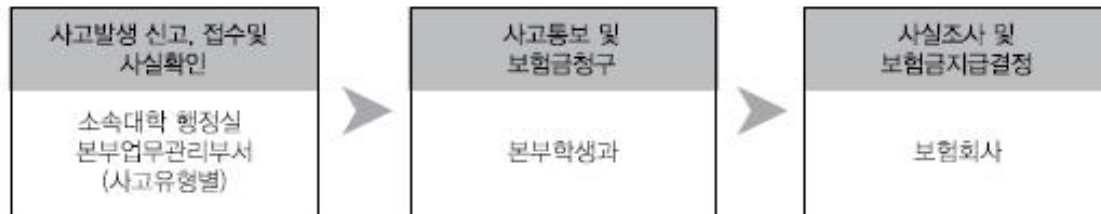
■ 보험별 보상한도액

구분		보상한도액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대인	1인당 : 1억원 1사고당 : 20억원
	대물	1사고당 : 3억원
구내 · 외치료비 담보 추가 (특별약관 II)		1인당 : 2백만원 1사고당 : 2백만원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고의로 생긴 손해
- 폭동, 소요, 시위(데모),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학교시설의 대규모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타인에게 임대한 학교시설로 생긴 손해
- 개인적인 배상책임(폭력 등)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가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
- 교통사고(단, 피보험자의
-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는 예외로 함.)
- 기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유형별 본부업무 주관 부서 및 소속 대학행정실

■ 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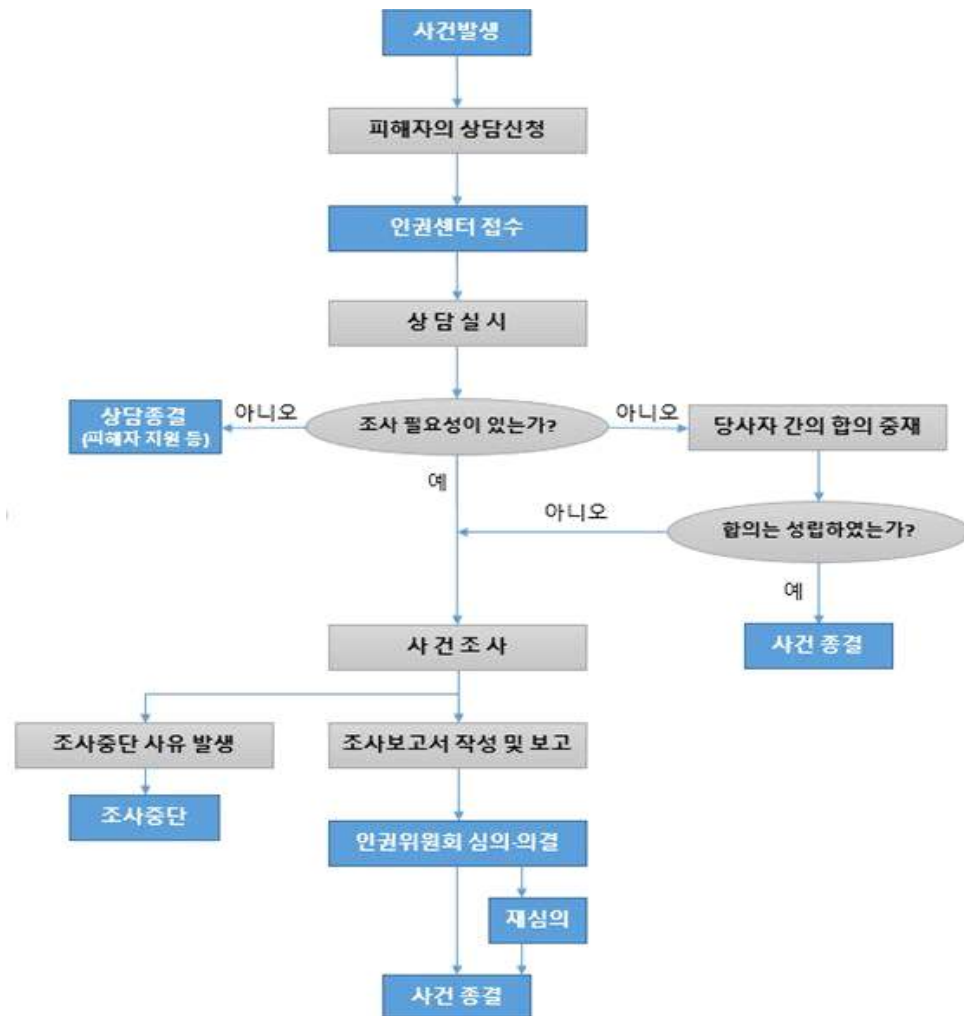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 발생한 경우)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 배상책임보험금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피보험자 자필작성)
- 사고경위서(학교내 사고인지 확인해주는 학교공문)
- 진단서(초진기록지)
- 입퇴원확인서(입원시)
- 수술확인서(수술시)
- 병원 및 약국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 재학증명서
- 학생통장, 신분증 사본

부당행위 관리체계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학생들이 학생, 교직원, 대학 구성원으로부터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과 사고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전북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홍보, 교육하고 있다(<https://hrc.jbnu.ac.kr/hrc/1495/subview.do>). 전북대학교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교육, 인권침해 피해 접수·상담 및 조사,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교육, 성희롱·성폭력 피해 접수·상담 및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 부당행위 관리 담당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들이 동료, 선후배, 교직원들로부터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의예과, 의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대학교 인권센터에 의뢰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 접수,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적 이의 신청 절차

교육과정 운영지침 제7조 6항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제7조

⑥ 학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학생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발표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교과목 책임 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생의 평가결과 이의신청을 확인한 교과목 책임교수는 평가결과 산출의 근거를 학생에게 설명한다.

학생이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교과목 책임교수에게 직접 대면 또는 비대면(예; 이메일 또는 전화 메시지 회신)으로 할 수 있고,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교과목 책임교수는 관련 학생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회신을 하고 있다.

또한 학생지도위원회 지침 제4조 3호에 소명 기회에 제공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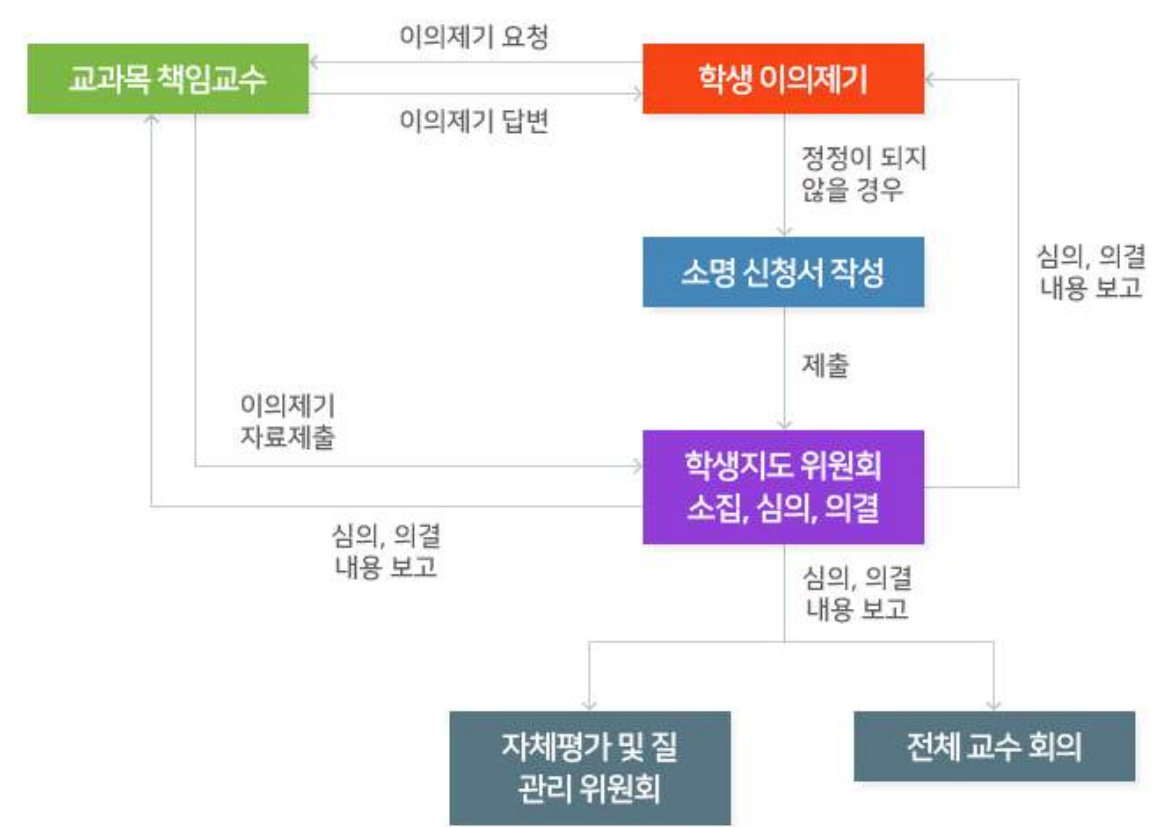
제4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성적, 유급, 졸업유예, 퇴학 등 결정에 대한 소명의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교과목 책임교수로부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소명신청서를 작성해서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한다. 성적 외에 유급, 졸업유예, 퇴학 등의 사항에 대해서 학생은 소명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소명신청서를 받은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학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소명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을 해당 학생, 교과목 책임교수에게 보고하고, 자체평가 및 질 관리위원회와 전체 교수회의에 의결한 내용을 보고 한다.

우리 대학의 이의제기 및 소명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생소명신청서](#) ↓

[학생소명기획운영세칙\(안\)](#) ↓

도서관 이용 안내

□ 개요

도서관 이용은 학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도 있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도서관 자리의 지정

도서관 자리의 위치에 대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다. 이때 도서관 자리의 배치는 학교에서 정하지 않고, 학생회 주관으로 각 학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제비뽑기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 도서관 자리 지정을 못 받는 경우

도서관 자리의 부족은 각 학년 당 5~6개 정도 된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강의실, PBL실, 소회의실 등을 이용하고 있다. 주로 강의실과 동아리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PBL실을 이용하고 있다. 소회의실의 사용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 예약은 행정실 학생담당 직원을 통해야 한다. 그룹스터디가 필요한 경우 동아리방으로 쓰고 있는 PBL실을 많이 사용한다.

□ 의학도서관의 특징

독립된 의학도서관이긴 하지만, 캠퍼스의 특성상 간호학과 학생들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치과대학생이나 수의학과생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적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4학년의 경우, 의대 3호관(생명과학관)에 따로 독서실이 마련되어 있다.



학생증·주차증·증명서·출입카드 발급 안내

[학생증]

1. 신규발급

- ◆ 오아시스에서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한 후에 예금거래신청서 1부 출력, 신용정보동의서 1부 출력, 사진 1매, 신분증 앞면 복사본 1매를 행정실(학생담당)에 제출
- ◆ 입력 및 출력절차
홈페이지 전북대학교 포털 클릭→로그인→학적관리 클릭→학생학적보유신상카드입력 확인·수정 [개인 인적사항 입력 후 확인(저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예금거래신청서 출력→신용정보 동의서 출력 오른쪽 상단에 학생학적보유→신상카드인쇄 클릭
※ 학생증에 선불교통카드, 본교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방문 접수 필요
(통장발급은 전북은행 전 영업점에 서 발급가능)
- ◆ 소요시간 : 약 1개월, 교통카드, 통장개설 체크카드 추가는 약 2개월
- ◆ 기타 : 오류가 발생한 경우, 2014년 5월 이후에 발급



2. 재발급

- ◆ 재발급 장소 : 본부 1학생회관 2층 전북은행 (063-270-3644)에서 신청
- ◆ 서류 : 신분증, 사진 1매, 수수료 : 2,000원
- ◆ 소요기간 : 10일 이내
- ◆ 수령방법 : 우편으로 수령
- ◆ 기타 : 해지한 후 재발급을 하는 경우, 위 서류와 재학증명서 1부 제출

[주차증]

1. 제출서류

- ◆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 가족명의로 자동차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 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법인차의 경우 : 법인에 본인이 회사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안 됨.(관련 증명 서류 필요함)

2. 임시 주차 또는 출입

- ◆ 의과대학 1호관 (본관) 1층 행정실에서 민원인 무료 주차권 이용 가능
- ◆ 단,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이용 가능함.

[증명서]

- ◆ 모든 학적 관련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는 전북대학교 홈페이지→민원서비스→증명서 발급 코너에서 인터넷 발급 또는 전북대학교 학생서비스센터(본부 건물 옆에 위치)에서 발급

[출입카드]

1. 출입카드 운영 개요

- ◆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여 면학 및 연구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모든 건물에 출입통제시스템 부착 운영 중

[대상건물 : 의과대학 1,2,3호관, 의학도서관, 학생회관]

2. 제출서류(신규, 재발급) 및 제출처

- ◆ 통합경비시스템 카드 신청서 1부, 입금증 1부(16,500원)

- ◆ 서식 출력 - 의과대학 홈페이지 (www.med.jbnu.ac.kr)-커뮤니티-행정자료실-학생(2번)에 탑재함
- ◆ 제출처 - 행정실 학생담당

[기타 유의사항]

1. 포털(오아시스)에 입력한 학적사항 등은 매우 중요하며, 주소, 핸드폰 등 변경 시 포털에서 직접 수정 후 행정실 학생담당에게 통보 요망.
(성적증명서 등 학교에서 발송하는 모든 서류는 학적에 있는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2. 기타 문의사항은 의과대학 행정실의 해당부서에 문의 혹은 방문하여 처리



기초의학 안내

- 기초의학교실 소개
- BK21 FOUR 21세기형 의과학
창의인재양성 교육연구단
- 기초의학 전공 안내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소개



기초의학교실 소개

면역학교실 | Department of Immunology

조교 박정수 3067

면역학은 건강과 질병, 면역체계의 생리적 작용을 다루는 과학의 한 분과로 면역 질환에서 면역 체계 (면역 질환, 과민성, 이식 거부 반응, 면역 결핍증)의 고장, 생체 내 및 생체 면역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물리적, 화학적 및 생리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면역 반응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있는데, 후천면역은 T 세포, B 세포, 항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천면역 시스템은 식세포 및 감염의 부위로 이동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식작용과 세포독성을 가지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천면역 체계는 후천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Host defense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Host defense는 이미 언급된 여러 가지 면역학적 질병을 유발합니다. 우리 면역학 교실은 선천면역반응을 연구하여 조절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천연제품의 새로운 항암 및 항비만 약물의 개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면역학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등 여러 가지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역 시스템의 세포 및 분자 기초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예방 접종,자가 면역 질환 및 암 면역학 등 포함 될 것이며, 건강과 질병 상태와 폭 넓은 주제의 면역 체계의 중요성을 지향합니다.

교수명	직위	연구분야	E-mail	전화번호	비고
김대기	교수	염증질환 병인 및 조절인자 연구	daekim	3080	주임
최진경	조교수	자가면역질환 및 염증질환	jkchoi	3062	

미생물학교실 | Department of Microbiology

조교 한지예 3066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교실은 의학전문대학원 생명과학관에 위치하고 있다. 미생물학교실에는 4명의 교수와 1명의 조교가 근무한다. 교수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연구한다. 이 교실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질병발생기전, 감염병원체에 대한 숙주의 방어, 줄기세포생물학 및 유전자요법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교수들은 연구 활동은 물론 의학전문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담당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교수명	직위	연구분야	E-mail	전화번호	비고
이황호	교수	세균(결핵균)-숙주 상화작용	hwangho	3070	

교수명	직위	연구분야	E-mail	전화번호	비고
홍성출	교수	미생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병인기전 연구	seonghong	3105	
한명관	교수	패혈증/줄기세포	iamtom	3106	주임
정경민	교수	바이러스학	kmin	3068	

법의학교실 |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조교 심명석 3074

법의학은 각종 변사체에 대하여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고, 성별, 연령, 인종을 포함한 개인식별과 자살 및 타살, 사고사 등 사망의 종류 감별, 손상종류, 손상정도, 사후경과시간, 외상과 사인의 관계 등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법의학은 사회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혈흔, 모발, 정액, 용의자 정신감정 등의 검사를 통하여 피해자를 식별하고 범인을 추정함으로써 범인검거에 이바지하며, 무고한 혐의자에 대하여 무죄를 입증하고, 나아가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 외에도 법의학은 보험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죽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인간의 분쟁을 비롯한 각종 법률적 문제를 의학적 측면에서 해결하는 학문으로 급성 전염병예방과 함께 국가의학에 해당한다.

전북대학교 법의학교실은 현재 교수 1명, 조교 1명, 의료기술직 1명으로 검찰의 지휘하에 경찰에서 의뢰된 100건 이상의 부검을 매 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법医学을 강의하고 있으며, 수사관을 위한 법의감식과정 등 여러 개의 법의학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교수명	직위	연구분야	E-mail	전화번호	비고
이 호	교수	법의학	foremed	3064	
노상재	부교수	법의병리학	sjnoh	4678	주임

병리학교실 | Department of Pathology

조교 이상아 3071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basic concept of disease, including its causes (etymology), the mechanism of its development (pathogenesis), the structural alterations it induces in the cells and organs of the body (morphologic changes), and the functional consequences of these morphologic changes (clinical significance). The course is provided during the second semester of first year and first semester of the second year. The course consists of 192 hours (96 hours of lecture and 96 hours of laboratory exercises) and yields 7.5

credits. During the second semester of the fifth year and first semester of sixth year, students attend CPC (clinic-pathologic conference) weekly. This course is taught by the staff of the department of pathology and clinical staff. 16 hours and 1 credit are allocated for the course.

교수명	직위	연구분야	E-mail	전화번호	비고
강명재	교수	비뇨기 종양 및 병리	mjkang	3075	
문우성	교수	간, 담, 췌 종양 및 병리	mws	3086	
정명자	교수	호흡기 종양 및 병리	mjchung	3072	주임
장규윤	교수	근골격, 림프계 종양 및 병리	kyjang	3136	
박호성	교수	위장관 종양 및 병리	hspark	3073	
김경민	조교수	신장 병리	kmkim	4691	

생리학교실

Department of Physiology

조교 박선향 3076

◆Medical Physiology

Physiology is the study of the basic processes underlying the functioning of the human body. The course is designed to analyze the individual function of the cell and organ first, and later integrate them into a functional whole, the human body. Lectures and experiments proceed from first to third quarter of the 1st year. The course consists of 192 hours (64 hours of lecture and 128 hours) and yields 6 credits.

◆Laboratory work

Students are divided into 2 groups, and each group is divided again into at least 6 subgroups. Each subgroup studies different subjects, and runs experiments for 2 quarters with same subjects in attendance of staffs and instructors.

교수명	직위	연구분야	E-mail	전화번호	비고
김선희	교수	Cardio-renal physiology	shkim	3078	
김성주	교수	Endocrinology	szkim	3093	
박우현	교수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parkwh71	3079	
김수미	교수	Genomics, Cancer and Biomarker	soomikim	3077	주임
천성근	부교수	Neuroscience	sungkun.chun	4290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Department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조교 유가희 3081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은 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쿼터동안 의학생화학을 교육한다. 정상과 질병상태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기 위해 세포와 분자수준에서 대사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단백질의 발현 및 조절에 대해 강의한다.

교수명	직위	연구분야	E-mail	전화번호	비고
김종석	교수	종양학	jsukim	3085	
박병현	교수	대사학	bhpark	3139	주임
문영재	조교수	근골격대사학	yjmoonos	3883	

약리학교실

Department of Pharmacology

조교 허동현 3087

약리학은 화학물질과 생명체간의 연관성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약리학교실은 6명의 교수들이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한 주제로 신경약리, 심장약리, 전기생리, 천연물약리, 임상약리 등이 포함된다.

교수명	직위	연구분야	E-mail	전화번호	비고
곽용근	교수	생체 내 마그네슘의 역항구명 질병 biomarker 탐색	ygkwak	3091	
권영배	교수	교수 통증의 병인규명 및 신규진통표적 발굴	1972y	3088	주임
최복희	교수	심장 이온통로 역학규명 및 약리환성	bhchoi	4250	
김민걸	부교수	임상약리학 및 신약개발, 의료빅데이터 분석	mgkim	3090	

예방의학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조교 송미영 3094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예방의학은 개인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을 보호, 유지, 증진시키고 질병 및 장애와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예방의학은 통계학과 역학적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 또는 질병 발생의 위험요인과 질병의 자연사를 구명(究明)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행동양상을 평가하고, 새로운 치료법과 보건사업을 평가하는데 활용됩니다. 이러한 예방의학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보건정책의 개발, 보건사업의 기획, 건강을 해치는 환경적, 직업적 요인의 예방과 조절을 하는 보건행정과 관리를 합니다. 또한 개인 가족 또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과 손상의 발생, 진행 그리고 장애유발을 예방하는 임상예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의학통계학(Biostatistics)

통계학은 모집단의 모수를 표본의 추정량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학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연구자의 의문은 통계학적 추정과 검정을 통해 답을 얻기 때문에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입니다. 이 과정은 의예과 2학년에 제공됩니다.

역학(Epidemiology)

역학은 인구집단의 질병과 건강에 관한 학문으로 질병의 분포 양상과 이 분포 양상을 결정하는 요인을 연구하고 이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활용하는 학문분야입니다. 이 과정은 의학과 1학년 2학기에 「환자의사사회2」에서 제공됩니다.

환경 및 직업보건(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생활환경 또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노출된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의한 건강장애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과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학문분야입니다. 이 과정은 의학과 2학년 1학기에 「환자의사사회3」에서 제공됩니다.

보건의료관리(health care management)와 보건의약관계법규

보건의료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의 기획, 실행 및 평가활동으로, 의대생들은 보건의료정책, 의료보장, 건강관련행태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고시 필수과목인 보건의약관계법규와 함께 의학과 2학년 2학기에 「환자의사사회4」에서 제공됩니다.

지역사회의학 임상실습

지역사회의학이란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보건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에 관한 학문이며, 의사와 기타 보건요원 및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분야입니다. 이 과정은 의학과 3학년 2학기에 「지역사회의학 임상실습」에서 제공됩니다.

교수명	직위	연구분야	E-mail	전화번호	비고
염정호	교수	역학 및 보건통계	yjho	3131	
권근상	교수	지역보건 및 직업환경의학	drkeunsang	3137	주임
이주형	교수	역학 및 지역보건	premd77	3095	
손정우	조교수	환경 및 역학	jsohn63	3096	

First-year medical students receive extensive training in the basic elements of normal human structures.

◆Gross Anatomy

The course is designed to inform the medical students of the structures of the human body, the interrelation of the body's parts, and appropriate clinical references. The course is largely based on laboratory exercise (dissection) and covers structures of head and neck, thorax, abdomen, pelvis, perineum, and extremities.

◆Histology

This broad-based course covers the light and electron microscopic structures of cells, tissues, and organs in relation to their functions. An understanding of these cell and tissue structures is complementary to the study of biochemistry and physiology. A working knowledge of normal light microscopic morphology serves as a background for the later study of pathology. Lectures cover the ultrastructure and biochemistry of cells and extracellular materials, with detailed descriptions of their specializations in tissues such as muscle, epithelium, nervous tissue, and connective tissue. The lecture correlates descriptions of the structure of various organs with their physiological functions. Laboratories give the student an opportunity to study light microscopic structure of normal cells, tissues, and organs and to review in small groups the concepts in the lectures.

◆Neuroanatomy

Students study the fundamentals of gross and microscopic structures and functions of the nervous system, with emphasis on the clinical relationship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Laboratory work includes dissection of the human brain and spinal cord.

◆Embryology

Embryology is taught to second-year premedical students.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the student with knowledge of gametogenesis, fertilization, embryonic development, development of organs, and possible malformations.

교수명	직위	연구분야	E-mail	전화번호	비고
송창호	교수	알레르기 질환 및 사람연골	asch	3101	주임
김형태	교수	신경병증 및 근육손상	htkim	3058	
한의혁	교수	신경해부학	han	3099	
채옥희	교수	세포생물학	okchai1004	3109	
최윤희	교수	알레르기 질환 및 천식	why76	3082	

의학교육학교실

의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방법론 및 이론을 개발하며 의학교육의 전반의 내용을 통합하고 지원을 한다.

교수명	직위	연구분야	E-mail	전화번호	비고
김형태	교수	의학교육 방법론 및 이론 개발	htkim	3058	주임
유효현	부교수	의학교육 방법론 및 이론 개발	hhyoo	3881	

연구지원실

조교 김주옥 3052

우리 의과대학 소속 교수 및 연구자들의 학술연구 진흥을 도모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 10월 설립되어 구성원들의 연구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학술연구의 활성화 및 질적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연구과제지원, 학술연구지원(세미나 지원 등), 공동실험실(방사선 동위원소실, 동물사육실 등) 운영, 공동실험기자재 관리 및 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 등을 통해 연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미래 선도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우수 대학원생을 유치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임상 의사교수요원 양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을 모집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교육지원실

조교 곽효우 4807

교육지원실은 의과대학의 교육에 관한 방법 개발, 조정, 집행, 평가 등에 대한 전문기구로 2003년도에 설립되었고 효율적인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위원회 산하 각종 소위원회(교수개발 소위원회, 통합강의 소위원회, 문제·증례·바탕학습 소위원회, 임상실습 소위원회,

선택실습 소위원회, 심화선택의학 소위원회, 인문사회의학 소위원회, 멀티미디어 개발 소위원회, 의료면담 소위원회, 의학연구 소위원회)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활동 및 교내외 교수개발프로그램 등에 대해 행정,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교육지원실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BK21FOUR 21세기형 의과학 창의인재양성 교육연구단

1. 교육연구단 소개

BK21FOUR 21세기형 의과학 창의인재양성 교육연구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북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는...

의학을 전공하여 의학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학과 생명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의 학과를 졸업한 학사 혹은 석사과정 졸업자들에게 의학과 연관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통합 중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구현하고자 기존의 의학전문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인 '의학과'에서 전일제 학생으로만 별도로 '의과학과'를 신설하여 학제를 개편하고, 2011년 3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의과학과는 대학원의 원래 목적인 학술연구에 대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의과학 분야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적의 연구훈련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의학뿐 아니라 의학 외의 여러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이 건강과 질병 정복을 위한 의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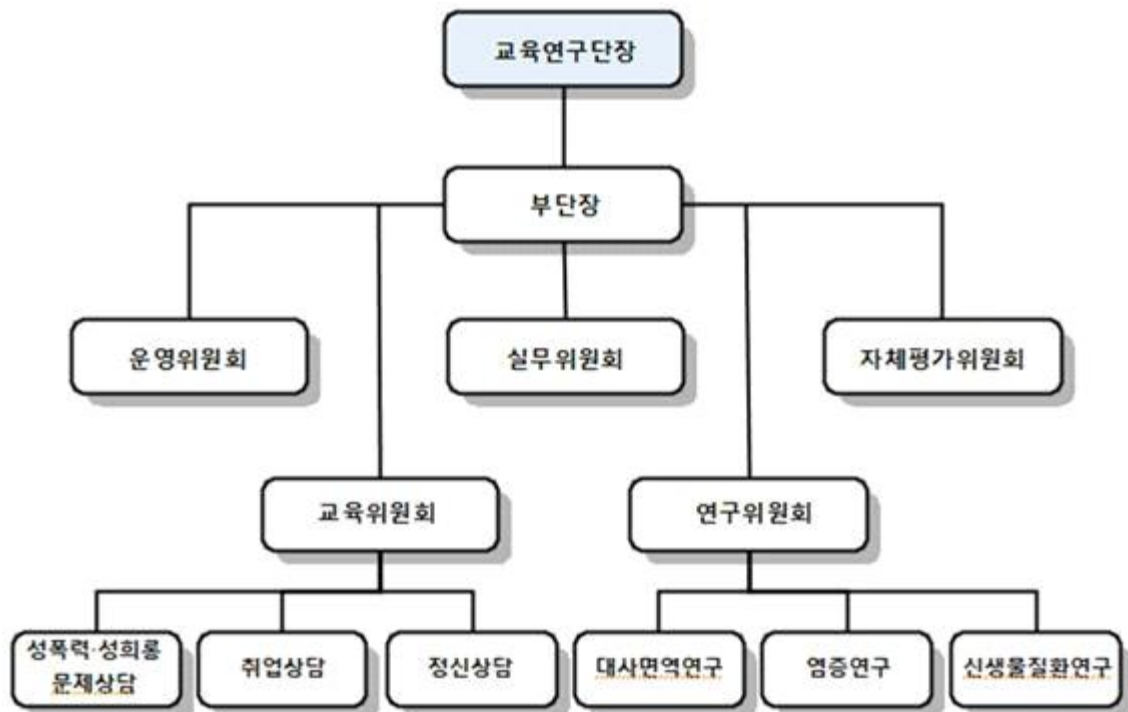
BK21FOUR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전북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는 교육부 BK21FOUR 사업으로 의과학과 대학원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구분	지원 내용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석사과정 대학원생: 매월 700,000원 - 박사과정 대학원생: 매월 1,300,000원 - 박사수료 대학원생: 매월 1,100,000원 - 연구논문 및 교육연구단 활동에 대한 성과급
국내학회 및 세미나, 워크숍 등록비	- 국내학술대회 및 세미나, 워크숍 등 참가 등록비 지원
국제화경비	- 국제학술회의 경비 지원 - 해외 장기연수 경비 지원

위 도표에서 언급한 지원은 BK21FOUR 사업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위 금액 외에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원 차원에서 각종 장학금과 지도교수 연구비에서 추가로 장학금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조직체계



1) 교육연구단장/부단장/사무총장

교육연구단직	소속	전공분야	직	성명
단장	의과학과	생화학	교수	김종석
부단장	의과학과	미생물학	교수	홍성출
부단장	의과학과	핵의학	교수	김희권
사무총장	의과학과	생리학	교수	김수미

2) 참여교수(기초 및 임상)

소속	기초/임상	전공분야	직	성명
의과학과	기초	병리학	교수	김경민
의과학과	기초	면역학	교수	김대기
의과학과	기초	약리학	부교수	김민걸
의과학과	기초	생리학	교수	김선희
의과학과	기초	생리학	교수	김수미
의과학과	기초	생화학	교수	김종석
의과학과	기초	생화학	조교수	문영재
의과학과	기초	생화학	교수	박병현
의과학과	기초	생리학	교수	박우현
의과학과	기초	병리학	교수	박호성
의과학과	기초	해부학	교수	송창호
의과학과	기초	예방의학	교수	이주형
의과학과	기초	병리학	교수	장규윤
의과학과	기초	미생물학	교수	정경민
의과학과	기초	병리학	교수	정명자
의과학과	기초	해부학	교수	채옥희
의과학과	기초	생리학	부교수	천성근
의과학과	기초	약리학	교수	최복희
의과학과	기초	해부학	교수	최윤호
의과학과	기초	면역학	조교수	최진경
의과학과	기초	미생물학	교수	한명관
의과학과	기초	미생물학	교수	홍성출
의과학과	임상	내과학	교수	강경표
의과학과	임상	영상의학과학	교수	곽효성
의과학과	임상	내과학	부교수	김소리

의과학과	임상	내과학	교수	김원
의과학과	임상	정형외과학	교수	김정렬
의과학과	임상	핵의학	부교수	김희권
의과학과	임상	내과학	교수	류완희
의과학과	임상	내과학	교수	박지현
의과학과	임상	내과학	교수	이창섭
의과학과	임상	정신과학	교수	정영철
의과학과	임상	핵의학	교수	정환정

기초의학 전공 안내

■ 기초의학 (일반대학원 의학과 또는 의과학과) 전공 과정 안내

- ☞ 석사 과정: 4학기 수료 후 석사논문
- ☞ 박사 과정: 4학기 수료 후 박사논문
- ☞ 석·박사 통합과정: 8학기 수료 후 박사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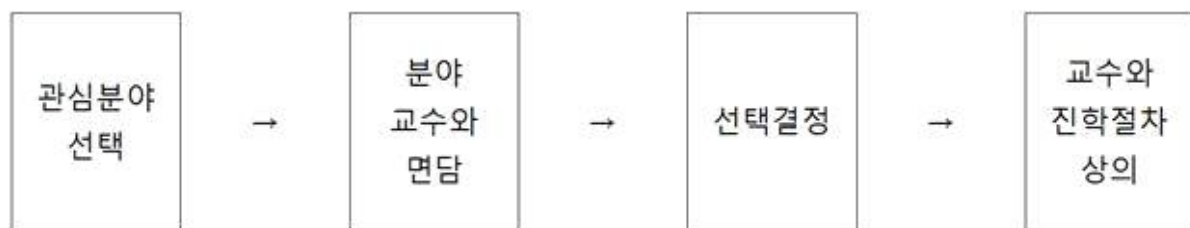
■ 기초의학 전공 시 지원 및 혜택

- ☞ 조교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국제논문 발표 지원 및 발표 시 인센티브 지급
- ☞ 국내/외 학회 참석 경비 지원
- ☞ 대학병원, MRC 및 의학 관련 연구소에서 지원

■ 기초의학 전공 시 장점 및 진로

- ☞ 본교 및 타교 기초의학 교실의 교수
- ☞ 본교 및 타교의 생명관련 분야의 교수
- ☞ 미국 등 선진국의 박사후연구원 및 교수
- ☞ 임상경쟁력 (연구능력이 있는 임상전공의 선호)
- ☞ 공직 및 기타분야 (국내외 공직, 제약산업 및 세계보건의료 행정·연구분야 우대)

■ 기초의학 전공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소개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란?

-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 일반대학원 기초의학과(의학과) 박사학위과정 또는
-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동시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

■ 복무기간

- 박사 수료(2년) + 의무복무 & 박사학위논문작성(3년)

■ 지원자격

- 의무복무기간(3년)을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 석사학위 취득자
- 전일제 기초의학 전공 박사학위 과정생으로 연구 가능한 자

■ 장학혜택

- 소정의 급여지급
- 임상 전공의 경우 임상의학교수요원 양성 사업(전문연구요원 제도)을 통하여 재정지원 가능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선발기준	•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통과(인정 기간 : 최근 4년) • 영어(TEPS) 300점(원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락 : 원점수 500점(환산점수 151.5 미만) • 대학원 성적 300점
선발 시기	• 연 2회(4월, 9월)



학생회 소개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는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부학생회장, 고문, 기획국장, 대외협력국장, 미디어국장, 사무국장, 소통복지국장, 행정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회관 2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다.





기 타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전북대학교 학칙



‘모두가 알아야 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희롱 없는 직장 만들기
무엇보다 **당신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같이 나섰다가
괜히 나까지..



어떻게 하는 게
좋지..?

피해자와 당신의 고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봅시다

우리 기관은 성희롱 사건이 없다?

아무도 모르게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심각하다

3.2%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실태가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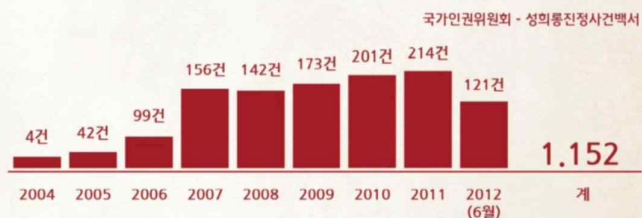
50.2%

내 근무지에
성희롱이 있을 것이라고
자각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의
성희롱은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직장 내 성희롱 현황

연도별 진정접수 건수



성희롱 진정인 현황

2012.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 사건 조사 및 처리 현황]

구분	피해자본인	제3자	계
사건 전체	951건 (82.6%)	201건 (17.4%)	1,152 (100.0%)
권고 사건	102건 (81.6%)	23건 (18.4%)	125 (100.0%)

당사자 간 관계

2012.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 사건 조사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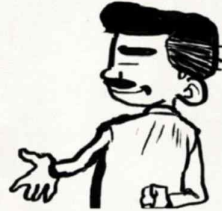
구분	직접고용 상하관계	직접고용 동료관계	간접고용 업무관계	업무거래 협력관계	교육관계	시설/서비스 이용관계	공권력/ 강제수용관계	기타	계
건수	704	101	18	46	71	97	37	78	1,152
비율	61.1	8.8	1.6	4.0	6.2	8.4	3.2	6.8	100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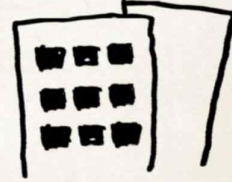
피해근로자

- 성적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
-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능력 저하
- 고용관계 불안 등 경제적 손실 발생



행위자

-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
- 징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경력 상 오점



기관

- 고용환경 악화로 생산성 저하
- 소송비용,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부담 가중
- 이미지 손상 등으로 경쟁력 저하

기관의 업무 효율 저하

피해자 대응방법 실태

1. 피하는 게 상책 (59.3%)
2. 주변동료나 인사담당자에게 말해 도움 요청 (24.2%)
3. 외부기관에 신고 (4.2%)
4. 회사 사직 (2.5%)
5. 기타 9.8%

출처: 취업포털 미디어통(2012.8)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절반이상이 성희롱 상담

56.4%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건 수 중 직장 내 성희롱 상담
(394건 중 222건)

성희롱 당한 적 있다

39.4%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여성노동자 1,6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그냥 참는다’
92.9%

공공기관 여성성희롱 피해자
‘그냥 참는다’
여성가족부, 2012년「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 침해는 물론,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중차대한 문제”

2010년, 한국노총

피해자 불이익조치

35.6%

222건 중 피해자 불이익 조치
사례가 79건
한국여성민우회 ‘2013 여성노동상담
상담경향’

왜 ‘그냥 참는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후
피해자는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가?

- 직장 내 인간관계, 직장생활이 힘들어 질 것을 우려해서(보복, 왕따 등 우려)
- 일상적인 일이라 항의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처방법을 몰라서
- 대처했다가 인사 고과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 이상한 여자로 소문날까봐
- 성희롱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 대부분 대처하는 것보다 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희롱/성폭력은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쉽지 않는,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영역

피해자가 스스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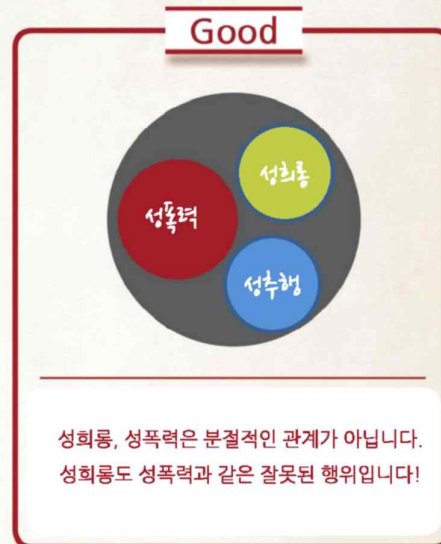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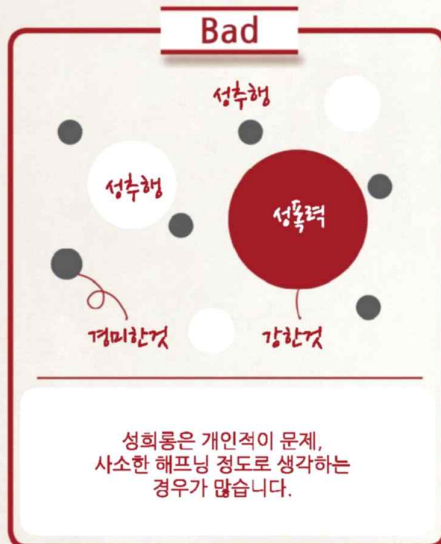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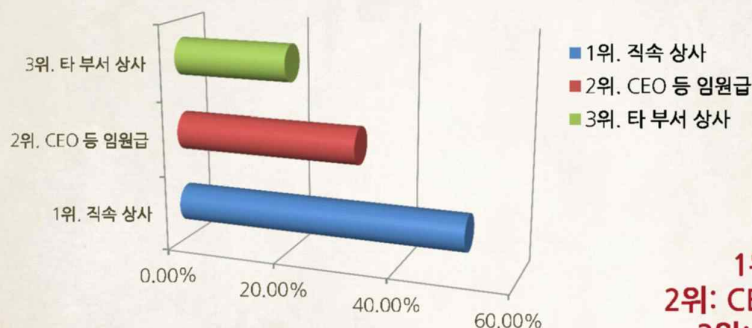


성희롱이란?

성희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핵심은 '권력(POWER)'의 개념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겪으면서 국제적으로 처음 사용
(1974년 미 코넬대학 Lin Farley)



1위: 직속 상사(51.4%)
2위: CEO 등 임원급(32.5%)
3위: 타 부서 상사(20.4%)

-출처: 취업포털사원인(2013.4.3)

사례 1

업무용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 동영상... 그 여자랑 닮았다고?!

"평소 사장님이 '어깨 좀 주물러봐라' '뽀뽀해 줘'라고 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곤 했어요. 하루는 업무용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성 동영상을 저한테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저랑 닮았다는 거예요. 정말 성적 굴욕감이 들었어요."

-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 (제2권) 149쪽 각색-

- ➔ 평소 지속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던 사장님
- ➔ 음란 동영상을 직원에게 노출
- ➔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과 닮았다고 성희롱
- ➔ 성희롱을 당한 후 퇴사

회사 대표가 직위(power)를 이용한 성희롱

남성 피해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구분	여성	남성
사건전체	1,061 (92.1%)	54 (4.7%)
권고사건	117 (93.6%)	4 (3.2%)

-2012.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 사건 조사 및 처리 현황]-



여성피해자가 많다고 해서 남성을 행위자,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경향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 고용, 지위 관계를 이용한 '권력(power)의 문제'입니다.
성희롱 관련법에서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례 2

남편 자식 두고 사랑한다고? ‘130통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나는 너무 불쾌해요. 남편과 자식이 있는 사람이... 부하직원 뽑아 놓고, 그렇게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하게 계속 제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도... 벌써 세 번째예요. 그때 천안에서 나를 덮치려고 했을 때, 그때 이후에 내가 분명 싫다고 얘기했으면 더 이상은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또 다시, 내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분명히 앞으로 그런 행동하지 마라, 난 그런 식으로 하면 일 못하니까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 (제2권) 158쪽 각색-

- ➔ 부하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팔짱을 끼고 회식자리에서 덮치려는 행위를 함
- ➔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고 직장을 그만 둠
- ➔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된 성희롱

여성 대표에게 성희롱 당한 남성 피해자

언어적인 성희롱이 가장 많습니다.

피해자 76명, 복수응답.
여성가족부, 2012년「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76.3%
언어적 성희롱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인 비유
술 따르도록 강요 등



53.9%
신체적 성희롱

술자리에서의 어깨동무,
마사지 요구 등
(회식 자리에서 빈번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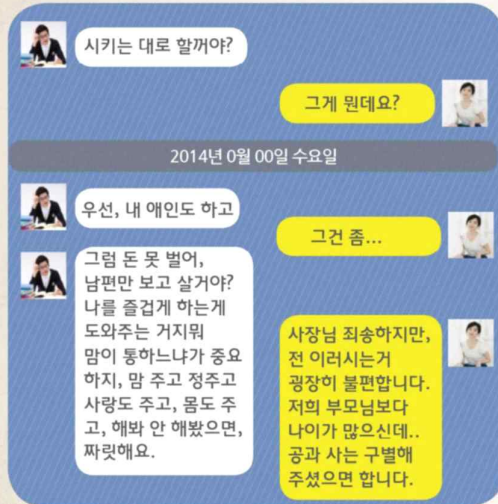


26.3%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줌
신체 특정부위 노출 등

사례 3

광고업무 대행 계약 관계의 갑과 을 '성희롱은 메시지를 타고~'



- 업무상 맺은 메시지를 이용해 성희롱
- 이를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심리적 괴로움에 업무 관계를 종료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 (제3권) 28쪽 각색-

**스마트 폰 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성희롱,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 법 제도〉

[성희롱관련 법 제정 취지]

-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 근로의욕 및 능률 등 피해와 후유증, 사직 등 노동권 박탈의 문제
- 성차별적인 인식 또는 관행에 의한 근로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 불법 행위
- 사회적 책임 (국가 및 사업주의 책임)이 따르는 행위

- 여성발전기본법 (1995.12. 제정): 처음으로 '성희롱' 용어를 명시함으로써 법률용어가 됨
- 남녀고용평등법 (1999. 개정): 성희롱 개념과 법적 규제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 마련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999.2. 시행):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 공공기관 종사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법 (2001. 제정): 2005년 남녀차별금지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조치

[성희롱 첫 판례]

• “근로자로서의 근로의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1993년 서울대 교수에 의한 성희롱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25. 94나15358 판결
- 처음으로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권 침해를 '성희롱'으로 명명
-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관련 법 제도 마련

성희롱의 성립 요건

현행법에 규정하는 성희롱은

업무나 고용관계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전제**



4가지 모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



직장내 성희롱

여성발전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국가인권위원회법

현재 법으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상황은?

1

여직원에게
“여자는 커피만 잘 타도 된다~”
고 말했다.

2

여성의 누드사진으로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꾸고
여직원에게 자랑했다.

3

직장상사가 일 때문이라고
불러서 나왔더니
덱석 손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4

출근길에 모르는 사람이
“치마가 짧아 좋다”
고 했다

현재 법으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상황은?

1

여직원에게
“여자는 커피만 잘 타도 된다~”
고 말했다.

2

여성의 누드사진으로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꾸고
여직원에게 자랑했다.

3

직장상사가 일 때문이라고
불러서 나왔더니
덱석 손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4

출근길에 모르는 사람이
“치마가 짧아 좋다”
고 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2. 여성의 누드사진으로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꾸고
여직원에게 자랑했다.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

3. 직장상사가 일 때문이라고
불러서 나왔더니
덱석 손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

이거 이거
성희롱 성희롱



음... 그건
성희롱이 맞는데

성희롱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1. 여직원에게
“커피나 타오라~”고 말했다.

성희롱이 아닌 성차별

4. 출근길에 모르는 사람이
“치마가 짧아 좋다”고 말했다.

성희롱이 아닌
불쾌감을 주는 성적 언동

이거 이거
성희롱 성희롱



음... 그건
성희롱이 아닌데

성희롱

직접 판단해 봅시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는 직원들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B를 알게 되었다.

A는 B와 같은 과에 배치되었고 이후 직장 내에서 B와 마주칠 때마다 면담을 하자고 했다.

면담을 하러 간 A에게 B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하자며 정작 면담은 하지 않았다.

그 후 B는 A에게 소주나 한 잔 하자며 술을 권했다. A는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아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녁 식사와 함께 소주를 먹게 되었다.

B가 맥주를 더 하자는 제안에 A는 식사 값을 B가 낸 것이 마음에 걸려 B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맥주를 마셨다. 10시경 귀가 하던 중 비가 내려 같은 우산을 쓰고 가다가 B가 A의 어깨에 손을 올리 고, 앞의 여관을 보자 "우리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볼까?" 하고 말했다.

성희롱일까요?!

성희롱이 맞습니다!



- ✓ 행위자와 피해자 - 증거 및 진술을 고려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판단
- ✓ 업무 관련성 - 발생장소가 사내가 아니었어도 1:1 면담이었기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 ✓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 A가 B에게 느낀 감정
- ✓ 합리적 일반인 '나'의 관점 - 합리적인 일반인이 피해자라면 앞의 사례에서 성적 불쾌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낄 만하다고 인정.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무리 없음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본인 때문에 직장 환경이 망가졌다는
자책감까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어도 성희롱으로 받는 심리적인 피해는 심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 주세요.

성희롱 발생시 회사 동료 및 상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X

네가 오해한거
아니야?

O

정말이야?
힘들었겠구나

성희롱
당했어요!



피해자의 기분을 헤아리는
공감과 동조의 자세가 필요

X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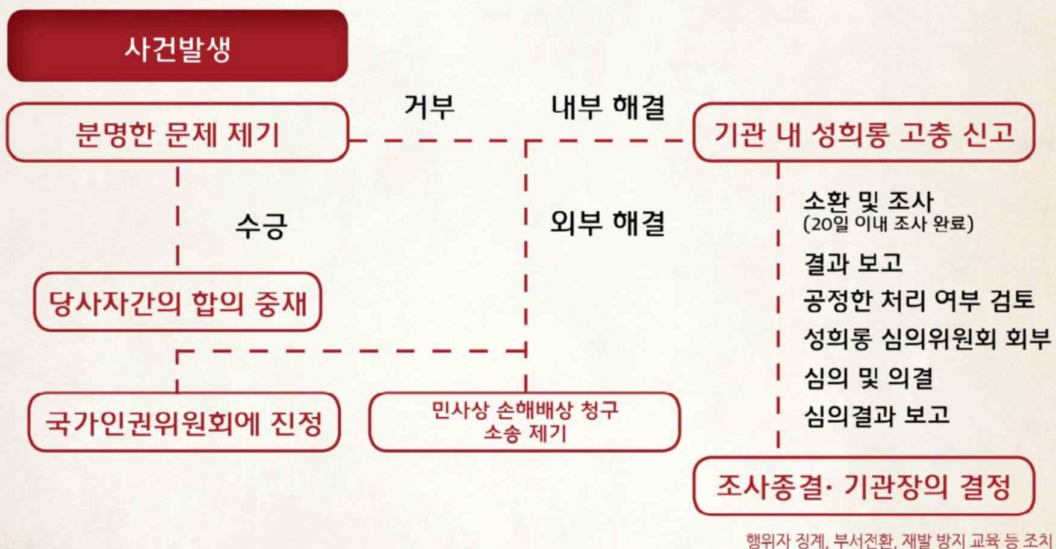
그래!
내가 도와줄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할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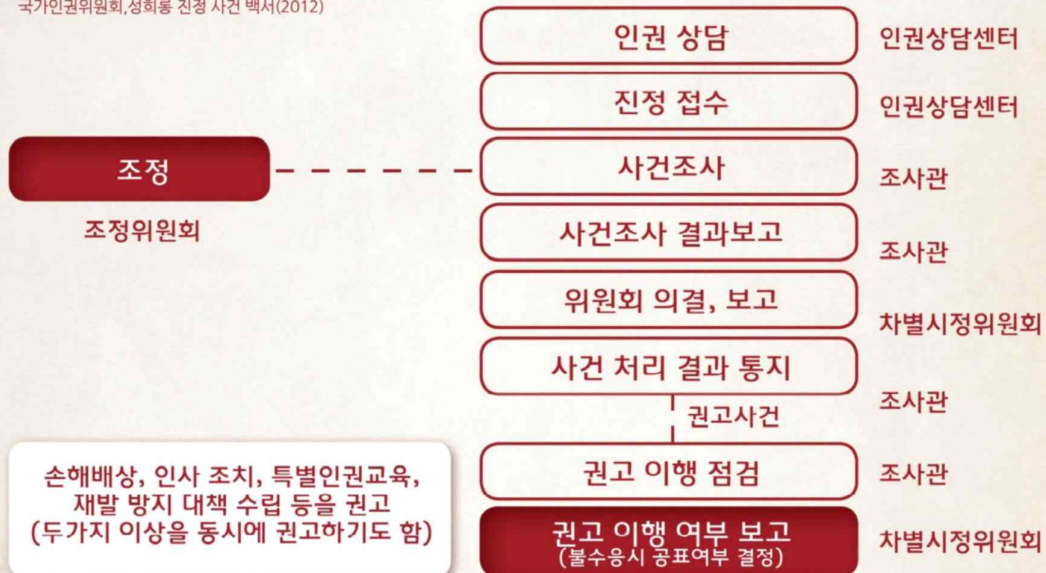
대응 행동 및 이의제기 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성희롱 피해시 대처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처리 과정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 사건 백서(2012)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네..”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사실을 밝힌 피해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 근거 없는 소문(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 사건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시선
- 선정적인 관심의 희생양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생각하는
주변인들에 의해,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음

2차 피해
성폭력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개인정보등이 노출되어
경계되는 정신적 고통, 그 과정에서
잘못된 사회통념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

“이번 일로 이제 성희롱 없는 회사가 될 거야!”



피해자의 문제 제기로 인해
성희롱 없는
건강한 직장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

행위자의 역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접촉하지 말 것
사건 내용을 무분별하게 말하거나 공개하지 않기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및 징계 수용
성희롱 발생 시 즉시 사과

조직의 역할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 근로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즉각 분리할 것
피해 구제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할 것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담당자 비밀 유지할 것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평소에 숙지할 것

제3자(동료)의 역할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리적 지지
피해 내용 소문 내지 않기 (수군거리지 않기/~ 카더라 통신~ 만들지 말 것)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직장 내 성희롱

올바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전북대학교현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조직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전북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자유, 정의, 창조의 정신으로 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개발, 교육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학교조직

제 1 절 학교의 장

제3조(총장) ① 총장은 학교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 대학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및 학칙이 정하는 행정조직 설치상의 순서에 따라서 직무를 대행한다.(14.12.16, 19.02.28)

제3조의2(부총장) ① 부총장으로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및 대외협력부총장을 둔다.(14.12.16, 19.02.28)

② 부총장은 「전북대학교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할 수 있다.(14.12.16)

③ 삭제(16.11.24)

제4조(총장의 선출)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직접선거제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12. 8.24, 18.02.28)

제 2 절 교육조직

제5조(대학 및 대학원 등) ① 본 대학교에 단과대학으로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상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및 글로벌융합대학을 둔다. 다만, 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은 익산시에 둔다.(08. 02.26, 09.02.27. 12.12.21, 14.01.29, 15.05.28, 17.08.02, 19.05.31, 21.02.01.)

② 스마트팜학과는 본부직속으로 두어 운영한다.(09.02.27. 12.12.21, 13.05.27, 16.10.18, 17.08.02, 21.02.01.)

③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을 두며, 전문대학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생명자원과학대학원, 법무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기술대학원, 정보과학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및 수의학대학원을 둔다.(09. 2.27. 10.6.10. 11.12.01, 21.02.01.)

④ 각 단과대학에 학부 또는 학과를 두며, 학부에는 전공을 둘 수 있으나 학과를 둘 수 없다.(20.01.07)

⑤ 각 대학원의 학칙, 대학원학위수여규정, 학·석사연계과정 및 대학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09.11.16)

제6조(학부 또는 학과) ① 각 단과대학의 학부(과)의 학생정원은 [별표1] 과 같다.

(07. 9.21, 07.11. 7, 08. 2.26, 09.11.16, 10.10.20, 11.8.26, 11.10.19)

② 각 대학의 신입생은 계열, 학부(과) 또는 전공별로 모집한다.

③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융합학부 및 융합전공) 모집단위가 아닌 융합전공 운영을 위하여 글로벌융합대학에 융합학부를 둔다. 다만, 융합전공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1.02.01.)

제7조(학장 및 대학원장 등)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다만 특수대학원장은 관련 단과대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으로 겸보한다.

② 각 단과대학장 및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학장 또는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의 교육·지도 및 부속시설의 운영을 담당한다.

④ 공공인재학부에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신설 09. 2.27. 12.12.21, 13.05.27, 16.10.18, 17.08.02)

제7조의2(부학장 및 부원장)(신설 19.2.28) ① 각 단과대학에 부학장을, 각 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다만, 특수대학원 부원장은 관련 단과대학 부학장 또는 전문대학원 부원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② 부학장은 단과대학장을, 부원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학부장·학과장 등) ① 각 학부에는 학부장을,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며, 학부장 및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제1항의 학부장 또는 학과장은 단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부 또는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한다.

③ 학부에 여러 전공이 있는 경우 학부장 외에 별도의 전공별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 3 절 행정조직

제9조(처·국의 설치) ① 본 대학교의 본부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산학협력처, 연구처 및 사무국을 두며, 처에 처장, 국에 국장을 둔다.(14.12.16, 19.02.28, 21.02.01.)

② 각 처의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14.12.16, 19.02.28)

제10조(과·부 등의 설치)(19.2.28) 교무처에 교무과·학사관리과를, 학생처에 학생과·취업지원과를, 기획처에 기획과·성과관리부를, 산학협력처에 산학협력부·산학진흥부를, 연구처에 연구진흥부·연구지원부를, 사무국에 총무과·재무과·시설관리과를 두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조직 내에 과에는 과장을, 부설단·관·원 및 부설학교에는 행정실장을 둘 수 있다.(07.12.21, 08.02.26, 12.06.25, 14.12.16, 17.12.28, 18.03.29, 19.02.28, 20.01.07, 21.02.01.)

제10조의2(팀의 설치)(신설 19.2.28)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조직 내에 팀을 둘 수 있다.

제11조(행정실 등의 설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표 2] 와 같이 행정실을 두되, 대학원에는 대학원교학부를 둔다.(08.02.26, 11.12.01, 14.12.16, 19.02.28)

제12조(기타 조직설치 및 분장사무) 제9조 내지 제11조, 제14조의 지원시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14조의9, 제14조의11부터 제14조의13까지에 의한 조직, 기타 하부조직 및 보좌기관 등의 설치·운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사무분장 규정」에 따로 정한다.(09.6.4, 11.2.18, 14.12.16, 16.11.24, 19.02.28, 20.12.24, 21.02.01.)

제 4 절 교육기본시설, 부속시설 및 부설학교(16.07.14)

제13조(교육기본시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중앙도서관을 둔다.(07.9.21, 07.11.7, 07.12.21, 08.2.26, 09.6.4, 10.2.25, 10.10.20, 11.2.18, 11.12.01, 11.12.30, 12.6.25, 12.12.21, 14.12.16, 15.12.31, 16.06.16, 16.07.14)

제13조의2(중앙도서관)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신설 16.07.14)

② 중앙도서관에 정보지원과와 정보운영과를 둔다.(신설 16.07.14)

③ 중앙도서관은 각 대학(원)과 특성화캠퍼스에 분관을 둘 수 있으며,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르고, 시설·직원·예산·자료의 기준·대학도서관발전계획 및 사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6.07.14)

④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6.07.14)

제14조(부속시설 등)(19.2.28.) ① 본 대학교에 지원시설로 입학본부·국제협력본부·홍보실·발전지원부·스마트정보화추진단·혁신지원사업단·연구윤리감사실(이상 본부 지원시설)·혁신교육개발원·정보전산원·생활관·평생교육원·박물관·인재등용관·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창업지원단·정읍첨단과학캠퍼스관리본부·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며, 부속시설·특별사업단 및 학교기업을 [별표 4]와 같이 둔다. 단, 본교 부설 연구시설 및 산학협력단 소관의 특별사업단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16.07.14, 16.11.24, 17.05.16, 17.08.30, 17.11.17, 18.03.29, 18.05.28, 19.02.28., 19.05.31, 20.05.19, 20.12.24, 21.02.01.)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16.07.14)

③ 부속시설 등의 장은 그 소속에 따라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들을 감독한다.(신설 16.10.18)

제14조의2 삭제 <21.02.01.>

제14조의3(입학본부)(16.11.24, 19.02.28) ① 우수 신입생 유치, 대학입시 홍보 및 입학제도 개선 등의 학생선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학본부를 둔다.

② 입학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을 둘 수 있다.

③ 입학본부에 입학과를 둔다.(19.02.28, 20.03.01)

제14조의4(국제협력본부)(16.11.24, 19.02.28) ① 국제교류협력, 외국과의 학술교류 및 언어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본부를 둔다.

② 국제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을 둘 수 있다.

③ 국제협력본부에는 국제협력부와 언어교육부를 둔다.

제14조의5(홍보실)(16.11.24, 19.02.28) ① 대학홍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실을 둔다.(19.02.28)

② 홍보실에 실장을 둔다.(19.02.28)

③ 삭제(19.02.28)

제14조의6(발전지원부)(16.11.24, 19.02.28) ① 대학발전기금조성·관리, 대외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지원부를 둔다.(19.02.28)

② 발전지원부에 부장을 둔다(19.02.28)

③ 삭제(19.02.28)

제14조의7(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16.11.24, 17.08.30) 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을 총장 직속기구로 둔다.(17.08.30)

②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17.08.30)

제14조의8 삭제(20.05.19)

제14조의9(창업지원단) ①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지원단을 총장 직속기구로 둔다.

②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두며,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15.09.14)

제14조의10 삭제(20.05.19)

[제14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10은 삭제(18.05.28)]

제14조의11(스마트정보화추진단)(신설 19.02.28) ① 대학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정보화추진단을 둔다.

② 스마트정보화추진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연구부총장이 겸보하며,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제14조의12(혁신지원사업단)(신설 19.02.28) ①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혁신지원사업단을 둔다.

② 혁신지원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제14조의13(연구윤리감사실) ① 연구비 관리·집행에 관한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윤리감사실을 둔다.

② 연구윤리감사실에 실장을 두며, 부실장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1.02.01.]

제15조(부설학교) ① 본 대학교 사범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설학교를 둔다.

1.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② 제1항의 부설학교 학칙은 따로 정한다.

제 5 절 산학협력단

- 제16조(설립·운영)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둔다.(신설 09.2.27.)
- ③ (삭제 14.12.16)
- ④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사무분장은 「전북대학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르고, 기타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절 학교 기업

- 제17조(설립·운영)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학교기업을 둔다.(14.10.30, 15.12.31)
1.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및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와 연계하여 육가공품 제조·판매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전북대 햄”(15.12.31)
 2.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와 연계하여 동물진료 및 수의 관련 연구용역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전북동물의료센터”(15.12.31)
 3.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재응용과학과 및 예술대학 미술학과(가구조형디자인 전공)와 연계하여 목재가공·판매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전북대학교 에코하우징”(신설 08.10.7, 15.12.31)
- ②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학교기업의 지원)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지원은 산학협력단이 담당한다.
- 제19조(현장실습학점 인정)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소요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0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에 대한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3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줄 수 있다.
-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10%를 넘을 수 없다.
-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교직원 또는 학생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신 보상금을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 ⑤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7 절 발전지원재단

- 제21조(발전지원재단) ① 본 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연구 활동,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발전지원재단을 둔다.
- ② 발전지원재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 3 장 교직원과 학무회의 등

제 1 절 교직원과 명예교수 등

- 제22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총장,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조교 및 행정직원으로 구분한다.(19.08.01)
- ② 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으며, 이중 산학협력을 주된 임무로 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 (11.12.01, 12.01.26)
- ③ 전임교원은 각 대학의 학과(학부) 또는 부속시설 등에 소속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 ④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3~9시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3. 2. 28)
1.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은 6시간으로 한다.
 2.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3시간으로 한다.
 3.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6시간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전임교원은 9시간으로 한다.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3. 2. 28)
- ⑥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담당교과목 교수 및 이와 연계되는 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한다.(신설, 19.08.01)
- ⑦ 강사의 임용·재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임용기간, 임금, 교수시간, 복무·근무조건, 면직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9.08.01)
- ⑧ 교직원의 정원관리와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 변경 13. 2. 28, 19.08.01)
- 제23조(명예교수 및 겸임교원등)(19.08.01) ① 본 대학교에 명예교수를 둘 수 있으며, 명예교수의 추대절차,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본 대학교에 겸임·초빙교원, 기금교수, 석좌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겸임교원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09. 6. 4, 11.10.19, 12.01.26, 19.08.01)
- ③ 산학협력을 전담할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신설 12.01.26, 14.10.30)

제 2 절 학무회의

- 제24조(구성과 소집) ① 본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무회의를 두고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학장, 차·국장, 입학본부장, 국제협력본부장, 혁신교육개발원장, 정보전산원장, 혁신지원사업단장,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장 및 창업지원단장 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기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할 수 있다. (09.6.4, 09.9.10, 09.11.16, 11.2.18, 11.12.01, 11.12.30, 12.05.18, 12.06.25, 14.12.16, 1

5.02.27, 15.09.14, 15.12.31, 16.06.16, 16.07.14, 16.11.24, 17.08.30, 18.05.28, 19.02.28, 19.05.17, 20.05.19, 21.02.01.)

② 학무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심의사항) ① 학무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학칙, 기타 제반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수회의 안건 중 필요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절 기획위원회

제26조(설치 등) ① 본 대학교에 중·장기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대학발전에 관련된 정책기획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15.05.28)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15.05.28)

제27조 삭제(15.05.28)

제 4 절 대학인사위원회

제28조(설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제29조(구성 및 소집)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부총장,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14.12.16, 19.02.28)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14.12.16)

③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④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심의사항 등)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 하고자 할 때의 임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1.8.26, 12.05.18)
2. 총장이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을 보직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임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1.8.26)
3.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타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절 교수회와 대학평의위원회(19.04.15)

제31조(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12.05.18, 19.04.15)

② 교수회의 대의기구로서 교수회장, 부회장 및 각 대학에서 선출한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평의회를 둔다.

③ 교수회 및 평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19.04.15)

- 제31조의2(대학평의원회)(신설 19.04.15) ① 본 대학교에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 ② 대학평의원회의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는 22명으로 하되, 각 구성단위별 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11명
 2.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3.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2명
 4. 전국대학노동조합전북대학교지부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5. 조교회에서 추천하는 조교 1명
 6.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재학생 5명
 7.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 ③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④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현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⑤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절 교 수 회 의

- 제32조(구성과 소집 등) ① 각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12.05.18)
- ② 교수회의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학장은 교수회의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수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각 대학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될 수 있다.
- ④ 총장은 필요에 따라 전교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33조(의결 정족수) 교수회의는 재적인원(6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 제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4조(심의사항) 교수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재입학, 편입학, 전학 및 전과 포함) 졸업 또는 수료에 관한 사항
다만, 입학(재입학, 편입학, 전학 및 전과 포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부(학과)장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4.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급여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장 또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장 학사운영

제 1 절 학사운영 일반

제35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11.12.01)

② 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는 3주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기 개강할 수 있다.

③ 특별학기로 여름학과 겨울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12.02.27)

제35조의1(학점포기) ①(삭제 14.02.20)

②(삭제 14.02.20)

③(삭제 14.02.20)

④(삭제 14.02.20)

제35조의2(특별학기) ① 기초·교양교육 강화 및 선·후수 이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등을 위하여 하기 또는 동기 휴가기간에 특별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12.02.27, 15.09.14)

② 특별학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2.02.27)

제3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14.10.30)

제37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휴가 : 제1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제2학기 수업시작 전까지
2. 동기휴가 : 제2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개교기념일 : 10월 15일
4. 국정공휴일

② 휴업일 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휴가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업을 할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4.10.30)

제38조(수업 연한 및 조기졸업) ① 각 대학의 수업 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학대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과 편입학 후 전공교육 4년),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 수의예과, 의예과 및 치의예과 2년, 수의학과, 의학과 및 치의학과 4년으로 구분하고, 수의예과의 교육과정은 수의과대학에서, 의예과 교육과정은 의과대학에서, 치의예과 교육과정은 치과대학에서 관장한다.(개정 2011.8.26, 13.02.26, 14.01.29, 20.0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점초과취득 등의 방법으로 졸업학점을 조기 취득하여 졸업요건 충족 및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1년 범위 내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한 자는 제외한다.(12.02.27, 13.02.26, 16.03.31)

③ 학·석사연계과정자로서 제83조(졸업요건)규정에 해당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는 7학기에 조기졸업 할 수 있다.(신설 09.11.16, 12.02.27)

제39조(재학 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잔여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 한

다.(13.02.26)

② 휴학 기간과 시간제학생 등록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항 신설 03.02.26)

제 2 절 입학과 등록

제40조(입학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로 한다.

제41조(입학자격) ① 각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전형을 거친 자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14.10.30)
4.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5.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자

②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수의예과 수료자,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치의예과 수료자를 진학시키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입학시킬 수 있다.

제42조(재입학자격) ① 재입학은 계열별 입학정원을 포함한 입학정원(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제적하였던 학부(과)는 유사학부(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약사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20.01.07)

② 제57조 제6호에 의하여 당연 제적된 자와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 할 수 있다.

제43조(편입학자격) ① 제3학년(수의학과, 의학과 및 치의학과는 제1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제2학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입학 정원 외로 제3학년(수의학과, 의학과 및 치의학과는 제1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할 수 있는 인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정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15.02.27)

③ 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④ 의과대학 의학과 및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2017학년도부터 4년간 입학정원 내 30퍼센트를 학사편입학으로 선발한다.(15.02.27)

제44조(지원절차) ①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그 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업성적증명서
3.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수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입학자 선발) ① 신입생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기록,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병합하여 전형하되 시일 및 방법 등은 따로 공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과 대학별고사의 성적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면접고사, 실기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특별전형은 취업자, 특기자,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지역의 우수 인재 등 대학별 독자적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 재외국민(귀순북한동포 포함),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되, 전형방법과 시일, 지역 우수 인재의 지역 범위 및 비율 등은 총장이 따로 따로 공고한다.(15.02.27)

④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5.02.27)

⑤ 편입학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선발한다. 다만,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신입생 선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입학허가 및 취소)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이를 취소한다.

제47조(입학절차) ① 합격이 확정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입한 후 소정의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이유 없이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48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등록(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수업연한 이내에 등록하는 자는 수강신청 학점수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3.02.26, 19.02.15)

②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납부토록하며, 장애학생 학점등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납부토록 한다.(항신설 07. 9. 5)

제 3 절 교내 전학 및 전과

제49조(전학, 전과의 시기 등) ① 제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수의예과·수의학과·간호학과로의 전학 또는 전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의예과·치의예과·의학과·치의학과·약학과로의 전학 또는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15.02.27, 20.01.07)

② 교내 전학 또는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학 또는 모집단위의 통합·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모집단위를 옮기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 또한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 외국인 유학생의 2학년 진학에 따라 모집단위를 옮기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70퍼센트 범위까지 이를 허용할 수 있다.(18.05.28, 18.12.20.)

④ 전학·전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와 비율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절차) 전학 또는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관계 학장의 승인서와 이미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1조(재학연한) 교내 전학 또는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제52조(과목이수) ① 교내 전학 또는 전과한 자는 기득학점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학부(과) 소정의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기득학점 중 당해학부(과) 과목과 유사 공통되는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나머지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4 절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53조(휴학절차)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3.05.27, 20.01.07)

② 병역복무를 위하여 입영하는 자는 입영 전에 학장에게 신고하고 입영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을 위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13.02.26, 14.06.23, 20.01.07)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임신·출산·육아 및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한 휴학은 제외한다. (신설 13.05.27, 20.05.19)

제54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해외연수기간,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 기간은 예외로 하고, 해외연수, 질병·임신·출산·육아 및 창업 기간은 휴학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각각 통산 4학기 이내로 하며,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휴학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13.02.26, 14.06.23, 16.06.16, 20.05.19)

제55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2학기 이내의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의 경우라도 수석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유예시킬 수 있다.

② 병역의무를 필한 자의 휴학종료 시기는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3학기 이내로 하며 학기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허가가 있어 4분의 3이상을 수강할 수 있을 때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6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7조(당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학장의 신청에 의거 제적한다.

1. 복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3.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5. 재학 중 통산하여 성적경고를 4회 받은 자

6.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7.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제 5 장 교과의 이수

제 1 절 교과과정

제58조(교과) ① 본교의 교과는 교과목별로 학수번호를 부여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 부전공과목으로 하며, 전공과목은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과 수의예과, 의예과 및 치의예과 학생을 위한 기초필수과목을 둘 수 있다.

②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및 치과대학 치의학과의 교과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교양과목은 예과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학대학 편입학생은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11.8.26, 15.02.27, 20.01.07)

③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수의과대학생은 제60조의 이수학점 이외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을 전공필수과목으로 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공필수과목에 가산되는 학점은 전공선택과목에서 감할 수 있다. 다만, 여학생의 실습기간은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10.6.10)

④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R.O.T.C.)을 선택하는 경우는 군사학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12.2.27)

⑤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 선택자는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09.11.16)

제59조(교양 및 전공이수)(20.01.07) ① 교양과목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예·체능계의 각 계열에서 균형 있게 선택 이수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1.07)

② 학생은 다음 제1호의 최소전공을 이수하여야 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전공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제2호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1.07)

1. 최소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부(전공)·학과에서 정한 기본적인 학점을 이수하는 전공
2. 심화전공: 최소전공 이외, 일정 학점 수 이상을 이수하는 전공
3.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부(전공)·학과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4.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부(전공)·학과 이외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5. 연계전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둘이상의 학부(전공)·학과가 서로 연계하여 참여학과 전공의 교과목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전공
6. 융합전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둘이상의 학부(전공)·학과 또는 국내외 대학과 서로 융합하여 참여학과 전공의 교과목과는 별도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

③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42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1.07)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21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1.07)

⑤ 제2항 제5호 및 제6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36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1.07)

⑥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 전공의 이수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1.07)

제60조(교과과정) ① 각 대학의 교과과정과 학수구분별 이수학점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11.8.26, 11.10.19, 12.2.27, 15.02.27, 15.09.14)

③ 학생은 교과과정과 학수구분별 취득학점 기준에 따라 교과를 이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12.12.21)

⑤ 성적 평점평균이 2.75 이상인 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 이수신청 시기는 2학년 1학기 이후로 한다.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학과(전공)의 전공필수과목, 전공 선택과목 소정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12.2.27, 16.03.31)

⑥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각 학과를 복수전공 학과로 택할 수 없으며, 이들 학과 소속 학생 및 법과대학 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11.8.26., 14.01.29, 20.01.07)

⑦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한 자의 학점은 이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며, 기타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⑧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각 학과는 부전공 학과로 택할 수 없으며, 이들 학과 소속 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10.6.10, 11.8.26, 14.01.29, 20.01.07)

⑨ 부전공과목의 소정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부전공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를 표시하며, 부전공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에 갈음하여 전공 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공이수자가 부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부전공학점은 이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⑩ 일반선택과목은 전공학부(과) 이외의 학부(과)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⑪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는 4학년 1학기 이후에 본교의 석사학위과정(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설강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양과정에 이중으로 인정할 수 없다.(12.2.27)

⑫ 선수, 후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선수, 후수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⑬ 2018학년도 서남대학교 특별편입학 시행으로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또는 4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해당학과 편제 완성 연도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을 대체 이수할 수 있다.(18.02.28)

제61조(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부(과), 주문식교육과정, 산학연합동과정, 산업체위탁과정 및 직업교육 훈련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4.10.30)

②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의 계약학과 등의 학생 정원은 [별표1-1]과 같다.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 정원, 운영 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 기간 및 운영위원회, 학생의 보호 및 경비 부담, 산업체 경력의 학점인정, 휴학 및 복학,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북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등으로 정한다.(신설 14.10.30, 15.12.31)

제62조(공학교육인증) ①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은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교육과정) ①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수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2.2.27)

② 교육과정의 공동운영과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이수단위)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체육 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과목은 예외로 한다.(17.08.02)

제 2 절 수 업

제65조(수업시간표) 매 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 전에 각 대학에서 작성,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시간표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작성케 할 수 있다.

제66조(수강신청과 승인)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학장에게 수강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매결연대학의 교류학생으로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는 자매결연대학에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수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일단 승인된 과목은 총장의 허가 없이 학기 도중에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④ 학사과정에 학점이월제를 둘 수 있으며 학점이월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13.08.26)

제67조(수업방식) ① 수업은 학기 중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및 성인학습자반 수업은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다.(16.03.31)

② 수업방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16.03.31)

제 3 절 시험과 성적

제68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그 외에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매 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달한 자가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3.02.26)

제69조 삭제(16.03.31) ① 삭제(16.03.31)

② 삭제(16.03.31)

제70조(수험자격) 매 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자는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다.

제71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2.2.27)

② 교과목별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D⁰등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F등급은 낙제로 한다.(12.2.27)

등 급	평 점	비고(100점 만점 기준)
A ⁺	4.5	95 ~ 100
A ⁰	4.0	90 ~ 94
B ⁺	3.5	85 ~ 89
B ⁰	3.0	80 ~ 84
C ⁺	2.5	75 ~ 79
C ⁰	2.0	70 ~ 74
D ⁺	1.5	65 ~ 69
D ⁰	1.0	60 ~ 64
F	0	60점 미만

③ 추가시험의 성적은 당해 시험점수의 100분의 90미만으로 한다. 다만, 시험기간 중복 또는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매 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되거나 수강 신청한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0점이 된다.

제72조(성적경고) ① 매 학기 학업성적 성적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성적경고를 한다. 다만,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치의학과 학생과 졸업학점을 충족한 학생 또는 졸업 최종학기 학생은 제외한다.(08.12.17, 12.02.27, 15.02.27, 20.01.07)

② 제1항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절 이수의 인정

제73조(학점의 인정) ①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 학점을 인정한다.

②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③ 편입 또는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이를 인정한다.

④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소정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및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국내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1/2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으로 한다.(항신설 07. 9. 5, 개정 20.08.26)

⑤ 교육과정 개설과목 중 언어교육원에 특별강좌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신설 07. 9. 5)

⑥ 입학 전에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항신설 08. 5. 27)

⑦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고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국가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16.11.24)

제74조(다른 대학과의 학점교류) ① 학생이 본교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다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외국대학과 복수학위 및 공동 학위 취득의 경우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다만 편입학자의 인정범위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1.02.01.)

② 국내·외 대학(교)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③ 학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5조(학점의 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 및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학년말로 할 수 있다.(11.08.26, 15.02.27)

제76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기본학점은 졸업학점이 130학점 이하인 학과는 18학점,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졸업학점이 130학점인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는 18학점,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졸업학점이 140학점인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와 교직과정과 복수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자는 21학점으로 하되,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와 HRC(Honor Student of Residential College) 참여자는 기본학점 외에 3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및 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예과 및 치의학과는 매 학기 22학점까지,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경우 또는 총장이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4학점(의과대학 의학과는 3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TOPIK3급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기본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10.02.26, 11.08.26, 12.02.27, 15.02.27, 15.09.14, 17.08.02, 18.02.28, 18.12.20, 20.01.07)

② 현장실습, 계절수업 또는 언어교육원 특별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학생은 현장실습 또는 언어교육원 특별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이 당해 학년도 취득학점에 포함된다. (07. 9. 5, 단서 신설 10. 2. 26, 16.03.31)

제77조(졸업 및 수료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 또는 전공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는 학과 또는 전공별 졸업학점에 10학점이 추가된다.(10.02.26)

②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의과대학 의예과 및 치과대학 치의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2학점 이상으로 한다.(11.08.26, 15.02.27)

③ 각 학년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10. 2. 26, 15.09.14)

1.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학생)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수는 각각 30학점, 60학점, 90학점, 120학점으로 한다.
2.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는 각각 33학점, 65학점, 98학점, 130학점으로 한다.
3.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는 각각 35학점, 70학점, 105학점, 140학점으로 한다.
4.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는 각각 38학점, 75학점, 113학점, 150학점으로 한다.
5. 졸업학점이 160학점인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는 각각 40학점, 80학점, 120학점, 160학점으로 한다. 다만, 약학과는 1학년부터 4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으로 본다.(단서 신설, 20.01.07)

④ 수의과대학 수의예과는 교양과목 및 기초필수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과목을 포함하여 6학점 이상을 1학기 이상 재이수하여야 하며, 의과대학 의예과 및 치과대학 치의예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유급되고, 당해 학년에 이수

한 기초필수과목 중 성적이 C⁰이하인 과목을 전부 재이수하여야 한다.(10.02.26, 11.08.26, 15.02.27, 16.11.24, 19.02.15, 20.05.19)

1. 각 학기에 배정된 기초필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신설 19.02.15)

2. 당해 학년 전과목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경우(신설 19.02.15)

⑤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및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유급되고, 당해 학년의 모든 전공과목을 재이수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유급되기 전 취득한 전공과목의 성적을 인정하되, 유급된 당해 학년 중에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전공과목을 전부 재이수 하여야 하며, 의과대학 의학과는 재학 예정인 학년에 개설된 모든 전공과목을 (재)이수 하여야 한다. (15.02.27, 21.02.01)

1. 제3항에 불구하고 각 학년에 배정된 전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15.02.27)

2. 전과목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1.87 미만인 경우(15.02.27, 16.11.24, 18.02.28)

3. 당해 학년에 배정된 총 학점의 3분의 1 이상이 성적 등급 C⁰ 미만인 경우

(단,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학과는 제외)(15.02.27, 21.02.01.)

4. 당해 학년에 배정된 모든 전공필수과목 학점의 3분의 1이상이 성적 등급 C⁰ 미만인 경우 (다만, 성적 등급이 없는 전공필수과목은 제외하며, 의과대학 의학과에 한함)(신설 21.02.01.)

⑥ 간호대학 간호학과 2학년 이상의 학생은 제3항에 불구하고 각 학년에 배정된 전과목을 반드시 수강하되 중도에 수강 취소할 수 없으며, 당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은 1.75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유급된다.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의 소 과목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항신설 12.06.25, 12.8.31)

⑦ 간호대학에 편입학한 자 중 편입이전 학년의 모든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인정받지) 못한 자는 편입이전 학년의 모든 전공필수과목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항신설 08.12.17, 12.06.25)

⑧ 약학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유급되고, 유급된 자는 당 학기의 모든 전공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1.07, 21.02.01.)

1. 당 학기에 배정된 전공필수과목 중 2개 이상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21.02.01.)

2. 당 학기 전 과목 취득성적 평점평균이 1.75점 미만인 경우(21.02.01.)

⑨ 치과대학에 편입학하여 치의예과 기초필수과목을 이수하지(인정받지) 못한 자는 치의예과 2학년의 모든 기초필수과목을 선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8.26)

3. 삭제 <21.02.01.>

제78조(졸업논문 등) ① 총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과(전공)에 따라 소속 학생에 대하여 최종 졸업학기의 소정기일까지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을 과할 수 있으며 그 학과(전공) 등은 따로 정한다.

② 실기발표는 사전에 공고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공동발표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발표는 논문작성 제출과 동등한 정도가 되어야 하며, 공동발표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졸업종합시험은 전공과목을 균형 있게 과하여야 하며, 학부(과) 또는 대학 단위의 시험관리 위원회를 구성,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과목과 시험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9조(졸업논문 지도교수) ①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및 졸업종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도교수는 최종 졸업학년초까지 학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②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반드시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 수는 10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별 전임교원이 부족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0조(졸업논문의 심사) 졸업논문은 2인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고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0조의2(평생지도교수제) ①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해 평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한다.

②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07. 9. 5)

제81조(졸업논문 불합격자) 졸업논문 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2년 이내에 2회에 한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 경우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15.12.01)

제82조(학년수료증)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별지서식 1의 학년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83조(졸업의 인정과 학위수여) ①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인정제 운영에 의해 총장이 별도로 정한(외국어시험, 컴퓨터관련 자격증취득, 전공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 자격취득 등)기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졸업논문 등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심사에 합격한자로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에 의한 '진로개발 및 상담'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 3의 학위종별에 따라 별지서식 2의 졸업증서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별지서식 2-2의 영문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07. 9. 5, 07.12.21, 08. 2.26, 09.11.16, 12.02.27, 15.09.14)

② (삭제 12.12.21)

③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졸업자격인정제 운영에 의해 총장이 별도로 정한(외국어 시험, 컴퓨터관련 자격증취득, 전공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 자격취득 등)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졸업논문 등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심사에 불합격하거나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에 의한 '진로개발 및 상담'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졸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지서식 3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07.09.05, 09.11.16, 12.02.27)

제83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83조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19.02.15)

②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위한 운영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0.2.26, 19.02.15)

제84조(재학기간 연장) 부전공, 교직과정 또는 복수전공 이수를 위하여 재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등록시에 별지서식 4에 의한 재학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자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재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5조(명예졸업증서 수여) ① 학사과정 재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
2.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의 본교 발전과 명예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

②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졸업의 취소) 졸업생으로서 제73조 제2항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졸업 및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 6 장 학 생

제 1 절 학생활동

제87조(학생자치기구) ①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탐구와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조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8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9조(학생지도) 총장은 학업 및 학교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90조(금지사항) 학생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91조(간행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절 장학제도

제92조(장학금)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급여한다.

제 3 절 규율과 상벌

제93조(교칙준수) 학생은 본 학칙과 따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 전심전의 학업에 종사하고 교양과 덕성을 함양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94조(결석신고)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학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포상)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그 행위가 타의 모범이 되어 표창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96조(징계사유 및 절차) ①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과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3.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자(신설 08. 2.28)
4.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신설 08. 2.28)
5.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

② 징계처분은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적 처분은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상벌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08. 2.26.)

제9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 전항의 유기정학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한부 정학을 말하며 무기정학은 30일을 초과하는 무기한 정학을 말한다.

제 4 절 장애학생 지원

제97조의2(장애학생 지원)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학습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한다.(신설 16.06.26)

제 7 장 등록금

제98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 본 대학교에 신입생 및 재학생의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11.2.18)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11.2.18)

제99조(신입학자 등의 등록금) 신입학, 재입학, 전·편입학 및 복학자는 등록금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11.2.18)

제99조의2(재학생의 등록금) ①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금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11.2.18)

②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등록금의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 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11.2.18)

제100조(휴학자의 등록금) 납입기한 전에 휴학이 허가되었을 때에는 그 기부터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11.2.18)

제101조(결석자 등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을 이유로 감액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11.2.18)

제102조(등록금 감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기타 법령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11.2.18)

제103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11.2.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0.6.10, 11.2.18)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11.2.18)

제 8 장 특종생

제 1 절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생

제104조(입학허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수학능력을 평가한 후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제105조(자매결연대학과의 교류) ①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대학과 학생을 상호 교류할 수 있으며 자매결연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6조(이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107조(편입학)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학생으로서 대학 입학 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 학생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

제108조(학칙준용)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학생에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2 절 위탁생

제109조(위탁생 입학허가) ① 정부 각 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그 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수학능력을 평가한 후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위탁생에게는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생으로서 본교에서 과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학한 자가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할 경우에는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0조(위탁생의 당연제적)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제적된다.

제 3 절 시간제학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제111조(시간제학생 등록) ① 시간제학생 등록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간제학생의 등록은 전일제 학생의 시간제등록과 시간제학생의 시간제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전일제학생의 시간제등록과 시간제학생의 시간제등록 허용인원은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학생 등록 대상자의 자격, 선발방법, 등록금의 책정과 학점신청기준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11.2.18)

제112조(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학위수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8.3)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신설 2011.8.3)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할 것(신설 2011.8.3)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일 것(신설 2011.8.3)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일 것(신설 2011.8.3)

②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학점을 통산한다. (신설 2011.8.3)

③ 총장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전공분야에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1.8.3)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수여하는 학사학위의 종별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서식 2-1의 학위증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07.12.21, 11.8.3)

제 4 절 명예학생(청강생)

제113조(명예학생(청강생) 선발 및 수료증 수여) ①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명예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료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선발 및 수료절차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절 공개강좌

제114조(목적) 본 대학교에 직무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의 수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115조(과목, 기간 등)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정원, 수강자격,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학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본부직할로 개설되는 공개강좌의 경우에는 과정장이 정한다.(단서신설 12.12.21)

제116조(비용징수)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11.2.18, 12.12.21)

제 9 장 자체평가

제117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09. 2.27.)

제 10 장 학칙개정

제118조(학칙개정) ① 이 학칙의 개정은 대학구성원의 의견이 있거나 교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장이 발의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10일 이상 예고하여 교수회 심의를 거친 후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09.02.27, 19.04.15)

② 학칙개정은 학사운영위원회 및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학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11.12.30)

③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조항의 효력은 정지된다.(16.10.18)

제 11 장 보 칙

제119조(시행규칙) 본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52. 10. 28 문고 제1489호)

- ① 본 학칙은 195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 ③ 부설 연구시설, 직제(교수회 포함) 및 기숙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④ 대학원위원회(박사학위수여 포함), 공개강좌,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⑤ 편입학, 전입학 및 교내 전학, 전과는 본 학칙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당분간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53. 10. 16 문고 제2803호)

본 학칙은 195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5. 8. 19 문고 제2697호)

- ① 본 학칙은 195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57. 6. 5 문고 제1278호)

본 학칙은 195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7. 8. 31 문고 제1278호)

본 학칙은 195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9. 4. 28 문고 제1347호)

본 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59. 8. 31 문고 제3092호)

본 학칙은 195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0. 2. 20 문고 제49호)

본 학칙은 196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1. 3. 23 문고 제1349호)

본 학칙은 196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3. 6. 21 문관행 1041.3-682)

본 학칙은 196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 학칙 개정 당시 존치하는 다음 학과는 1965년 2월 말일까지 존치한다.

<상과대학 경제학과>

부 칙(63. 12. 18 문고대 1041.3-1600)

본 학칙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8. 4 문고대 1041.3-1427)

본 학칙은 196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2. 3 문고대 1041.3-222)

본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2. 11 문고대 1041.3-2112)

본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은 196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9. 1. 6 대관 1041.3-321)

① 본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 변경 및 폐과된 학과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한다.

부 칙(69. 3. 22 대관 1041.3-341)

① 본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구 학칙에 의하여 기득한 각 사항은 본 개정 학칙에 의하여 인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69.12.1 대관 1041.3-1398)

본 학칙은 196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9. 12. 27 대관 1041.3-1593)

본 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과대학의 광산공학과 재학생은 1970년 3월 1일자로 자원공학과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70. 10. 31 대학 1041.3-1861)

본 학칙은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0. 12. 31 대학 1041.3-73)

본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 23 대학 1010-231)

본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4. 12 대학 1041.3-894)

① 이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생군사훈련 교육단에 입단하고 있는 장교후보생에 대하여는 변경 전 학칙을 적용한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이 학칙의 해당 학년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71. 8. 4 대학 1041.3-1694)

이 학칙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0. 20 대학 1041.3-3823)

본 학칙은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2. 31 대학 1041.3-4235)

본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1. 22 대학 1041.3-198)

본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5. 30 대학 1010-814)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 개정 당시의 농과대학 제4학년 학생은 농촌 실습기간을 1개월로 한다.

부 칙(72. 12. 22 대학 1041.3-1853)

본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거 현재 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부 칙(73. 1. 8 대학 1040-60)

본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2. 28 대학 1010-436)

(시행일) 본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197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교과과정 이수에 있어서 본 학칙에 저촉되는 경우는 입학 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72. 12. 31 대학 1041.3-33)

본 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거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부 칙(74. 3. 8 학무 1010-190)

이 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2. 20 학무 1010-289)

이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 학칙은 197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7. 29 학무 1010-953)

본 학칙은 197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9. 22 학무 1010-1250)

본 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5. 10 학무 1010-712)

본 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정대학 및 상과대학에 대한 특례규정과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197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77. 3. 10 학무 1010-440)

① (시행일) 본 학칙은 77.3.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실험대학 실시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에 대한 제30조, 제32조, 제42조, 제43조의 규정 적용은 개정 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③ (동전) 실험대학 실시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 후 실험대학에 복학하는 자에 대한 제43조의 졸업 학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부전공 이수자의 부전공학점은 전공 학점수에 포함한다.

이 수 학 기		1	2	3	4	5	6	7
구 분								
졸업학점		141	143	146	148	151	153	156
교 양		43이상	43이상	44이상	45이상	46이상	46이상	47이상
계열공통		6이상						
전공	인문사회계(법정대학법학과 제외)	70이상	70이상	76이상	83이상	90이상	79이상	104이상
	법정대학 법학과	85이상	85이상	89이상	93이상	98이상	102이상	107이상
	자연계(공과대학 공교과 포함)	73이상	73이상	79이상	82이상	92이상	98이상	105이상
	공과대학(공교과 제외)	76이상	76이상	81이상	87이상	93이상	99이상	105이상
일반선택	인문사회계(법정대학법학과 제외)	15	15					
	법정대학 법학과	0	0					
	자연계(공과대학 공교과 포함)	12	12					
	공과대학(공교과 제외)	9	9					

부 칙(77. 5. 12 학무 1010-708)

본 학칙은 197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8. 29 학무 1010-1210)

본 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1. 30 학무 1010-167)

이 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3. 7 학무 1010-1234)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197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동전) 실험대학 실시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 후 실험대학에 복학하는 자에 대한 제43조의 졸업학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부전공 이수자의 부전공학점은 전공학점수에 포함한다.

부 칙(79. 1. 22 학무 1010-120)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3. 26 학무 1041-583)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2. 26 학무 1041-1755)

① (시행일) 본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폐과된 학과의 최종학년이 폐지되어 유사학과로 복학 및 재입학한 학생의 제42조의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은 21학점(공과대학 금속공학계열, 정밀공학계열에 복학 및 재입학한 학생은 22-24학점)으로 한다.

③ (동전) 가. 실험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 공과대학 금속공학계열 정밀기계 공학계열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에 대한 졸업학점은 다음과 같다.

실험대학 이수학기	졸업학점
1학기	158학점 이상
2학기	155학점 이상
3학기	153학점 이상
4학기	150학점 이상
5학기	148학점 이상
6학기	145학점 이상
7학기	143학점 이상

나. 기 취득학점은 본 학칙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전 가항의 졸업학점에 미달된 학점은 개정된 교과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부 칙(80. 2. 27 학무 1041.3-436)

본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8. 20 학무 1041.3-1090)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8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7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교과과정 이수에 있어서 본 학칙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1981. 4. 29 학무 1041.3-81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3조(졸업정원), 제29조 제5항(학사경고로 인한 제적), 제32조(제2전공) 제4항, 제39조의 2(학사경고), 제43조의 6(학년수료증) 규정은 198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학무 1041.3-803 82. 4. 26)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중 제39조 제2항의 규정은 1981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동전) 198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제32조의 교과과정 이수에 있어서 본 학칙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입학 이후의 구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학무 125.4-1064 83. 5. 19)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30조 제5항 및 제6항, 제43조 제1항의 규정은 198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학무 1041.3-2204 83. 12. 26)

① (시행일) 학칙은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43조 제1항(졸업 및 수료학점) 중 법학과 졸업학점에 대한 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197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와 정밀기계공학과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자의 졸업학점은 이 학칙 제 4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동전) 7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성적은 당시 학칙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학무 1041.3-259 84. 2. 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9782호: 80. 2. 23) 부칙 제2항 및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83. 12. 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선의 정
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 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상동) 제2항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1985학년도
재입학기간까지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자 및 재소자는 그 복무기간 종료 후 2개학기 이
내에 재입학할 수 있다.

부 칙(학무 1041.3-1454 84. 9. 12)

본 학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1041.3-1558 84. 10. 20)

이 학칙은 198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25210-382 85. 2. 19)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제3항의 규정중 사회교육과의 전공배정시기에 관한 사항과 제43조 제6항의
간호학과 규정에 관한 사항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학무 25210-1694 85. 11. 29)

이 학칙은 변경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중 사범대학의 졸업정원 관리에 관한 규정은 1986학년도 제1학년부터 적용하고, 제39
조 제1항의 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규정은 198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25210-359 86. 3. 14)

이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25210-530 87. 4. 14)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정원 감축 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전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과대학 특
성화공학부의 '87, '88학년도 졸업정원은 '84학년도 졸업정원을 동 '89학년도 졸업정원은 '85학
년도 졸업정원을 '90학년도 졸업정원은 '86학년도 졸업정원을 적용하며, 사범 대학 국민윤리교육
과를 제외한 전 학과의 '87학년도부터 '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86학년도 졸업정원을 적용
하고 사회교육과 및 국민윤리교육과의 '87학년도부터 '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87학년도 졸
업정원을 적용하며, 인문과학대학 인문계의 '90학년도 졸업정원은 '87학년도 졸업정원을 적용한
다.

부 칙(학무 25210-1068 87. 8. 29)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87. 8. 29)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1989학년도 재
입학 기간까지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자는 그 복무기간 종료 후 2학기 이내에 재입
학을 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무 25210-623 88. 4. 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에 대한 제3조, 제39조의 3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 적용은 변경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동전) 이 학칙 이전의 학칙에 의하여 학사경고 제적된 자와 중도 수료자는 제13조 제2항에 불구하고 변경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동전) 이 학칙중 제11조, 제14조 제2항 및 제21조의 입학정원은 변경전의 졸업정원을 말한다.

제5조(동전) 이 학칙중 제29조는 1987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6조(동전) 이 학칙중 제30조 제5항, 제32조 제2항 및 제43조 제1항 규정중 사범대학은 198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89. 3. 21 학무 25210-45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이전의 학칙에 의하여 중도 수료된 자는 제13조 제1항에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제3조(동전) 1988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농과대학 수의학과 재적자는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에, 사회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에 재적자는 동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적 중인 자로 본다.

제4조(동전) 1988학년도 이전 공과대학 산업디자인과 입학생으로서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공과대학과 예술대학중 해당 학년이 존속하는 대학에 복학한다.

제5조(동전) 이 학칙중 제32조 제2항 및 제43조 제1항 규정중 공과대학, 농과대학은 199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90. 5. 4 학무 25210-53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0학년도 현재 의학과 및 치의학과 재적 중인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동전) 이 변경 학칙중 제31조, 제64조,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199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16조, 제32조 제2항과 제43조 제1항의 자연과학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전) 1989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농과대학 임산가공학과와 식품가공학과 재적자는 동 대학 임산공학과와 식품공학과 재적자로 본다.

제5조(동전) 1989학년도 이전 인문과학대학 도서관학과에 입학하여 휴학한 자 중 도서관학과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문헌정보학과에 복학한다.

부 칙(90. 6. 22 학무 25210-625)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중 제64조 제2항은 199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91. 3. 30 학무 25210-491)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0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공과대학 전자계산기공학과 재적자는 동 대학 컴퓨터공학과 재적자로 본다.

③ (동전) 이 변경 학칙중 제30조 제4항은 1992학년도 R.O.T.C. 입단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91. 6. 5 학무 25210-656)

이 학칙은 199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 17 학무 25210-35)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91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농과대학 임학과 재적자는 동 대학 삼림자원학과 재적자로 본다.
- ③ (동전) 폐과된 가정교육과는 구학칙에 의거 현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부 칙(92. 11. 27 학무25210-1482)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92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농과대학 농업기계학과 재적자는 동 대학 농업기계 공학과 재적자로, 농과대학 삼림자원학과 재적자는 동대학 산림자원학과 재적자로 본다. 다만, 1991학년도 이전 농과대학 임학과에 입학한 자 중 교직과정 이수승인을 받은 자는 계속하여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임업”의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93. 3. 31 학무 81412-537)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적학생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 93. 4. 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93. 8. 12 학무 81412-1235)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9782호, '80. 2. 23) 부칙 제2항,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83. 12. 30) 부칙 제2항 또는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87.8.29)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13조 및 부칙의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95. 7. 20, 학무 81412-870)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45조는 1995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1994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자연과학대학 전자계산학과 재적자는 동대학 컴퓨터과학과 재적자로, 예술대학 국악학과 재적자는 동대학 한국음악학과 재적자로 보고, 1994학년도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화학공학과군에 입학한 학생은 동대학 화학공업공학과 재적자로 본다.
- ③ (동전) 폐과된 공업화학과 및 화학공학과는 1996학년도까지 존속하고, 1993학년도 이전에 공업화학과 또는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학생 중 휴학 후 해당 학과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화학공업공학과에 복학한다.
- ④ (동전) 1994학년도 이전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중 1995학년도에 학과명칭이 변경된 전자계산학과 또는 국악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부칙 제2항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⑤ (동전) 1994학년도 이전에 특성화공학부(금속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에 입학한 자는 “제32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과 제42조, 제43조의 규정은" 구학칙을 적용한다.

⑥ (동전) 1994학년도 이전에 특성화공학부(금속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에 입학한 자 중 휴학 후 당해학과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학과(학부)에 복학하고, 1998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의 졸업학점은 150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96. 2. 24, 학무 81412-41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1일부터 시행하되, 1996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과통합 또는 학과명칭 변경으로 당해 학과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된 학부 또는 변경된 학과로 복학시키고, 복학생중 1999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은 1996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한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97. 8. 11 경과조치 항 변경)

③ (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재학 중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제2항에 의한 학과소속의 변경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④ (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에 공과대학, 농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한 자 중 1999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의 졸업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97. 3. 3, 학무 81412-632)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3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재적자는 동대학 윤리교육과 재적자로,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재적자는 동대학 지구환경과학과 재적자로 본다.

③ (경과조치) 폐과된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음악교육과는 구학칙에 의거 현재 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부 칙(97. 8. 11, 학무 81412-164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2. 26, 학무 81213-403)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5조는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1997학년도 이전에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4년제 복학 또는 6년제 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다. 다만, 6년제 과정으로 편입을 원할 시는 예과 2학년에 복학시키되, 예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경과조치) 1997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인문과학대학 고고인류학과 재적자는 동대학 고고문화인류학과 재적자로 본다.

(경과조치) 폐과된 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과, 화학과, 수학과 및 통계학과는 2000학년도까지 존속하고, 1997학년도 이전에 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과 또는 화학과에 입학한 학생 중 휴학 후 해당 학과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학부에, 수학과 또는 통계학과의 학생은 수학·통계정보과학부에 복학한다.

(경과조치) 1997학년도 이전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중 1998학년도에 학과통합으로 학부로 된 물리학과, 수학과 또는 화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부칙 제4항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99. 1. 6, 규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부(학과)통합·전공 명칭

변경으로 당해 학부(학과) 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된 학부(학과) 또는 변경된 전공으로 복학한다.

제3조(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에 재학 중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제2항에 의한 학부(학과)소속의 변경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99. 5. 11, 규칙 제4호)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1. 27, 규칙 제7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농과대학 축산학과 재적자는 2000년 3월 1일부터 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재적자로 본다.

부 칙(00. 7. 26, 규칙 제1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12. 1, 규칙 제13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43조 제1항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01. 3. 7, 규칙 제17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6. 13, 규칙 제18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8. 29, 규칙 제21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2조, 제3조, 제5조, 제85조, 제89조 및 제91조의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2. 27, 규칙 제25호)

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2. 27, 규칙 제29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02. 3. 27, 규칙 제31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5. 28, 규칙 제32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농과대학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농과대학에 재적하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농과대학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농업생명과학대학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03. 9. 1, 규칙 제34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 17, 규칙 제37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 재적자로 본다.

③ (동전)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부(과) 또는 전공의 통합·분리·명칭변경으로 당해 학부(과) 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분리·명칭 변경된 학부(과)·전공으로 복학한다.

④ (동전)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휴학 후 복학할 때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 재학 중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생정원조정에 의한 학부(과) 소속의 변경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직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는 의치의학예과는 구학칙에 의거 현재 학생이 수료하는 년도까지 학과가 존속한다.

부 칙(04. 3. 15, 규칙 제4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4. 23, 규칙 제41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7. 2, 규칙 제43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8. 6, 규칙 제44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1. 5, 규칙 제4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1. 18, 규칙 제47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1. 31, 규칙 제48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39조의 2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동전)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치의학과 및 의학과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과목의 재 이수 및 복학생은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으로 대체하여 이수한다.

④ (동전)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부의 분리로 당해 학부에 복학할 수 없을 경우,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전공 관련 분리된 학과로, 전공 미 배정 학생은 분리된 학과 중 희망하는 학과로 복학한다.

⑤ (동전)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부·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생정원 조정에 의한 학부의 분리·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직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부 칙(05. 4. 13, 규칙 제51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치의학대학원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치의학대학원의 행위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행위로 본다.

부 칙(05. 6. 10, 규칙 제53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4학년도 이전 입학한 의과대학 간호학과 재적자는 간호대학 간호학과 재적자로 본다.

부 칙(05. 9. 12, 규칙 제55호)

이 학칙은 200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2. 14, 규칙 제56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변경된 학과 및 전공 재적자로 본다.

③ (동전) 이 학칙 제45조제1항의 [별표5]는 2005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06. 4. 19, 규칙 제59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8. 31, 규칙 제61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32조의 3은 2006.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9. 19, 규칙 제62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2. 28, 규칙 제64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문과학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인문과학대학’에 재적하는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인문대학’의 해당 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전공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된 전공 재적자로 본다.

④(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 중 이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정에서 인용된 종전의 학칙 조항은 이 학칙의 해당 조항으로 본다.

⑤(부칙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학칙의 부칙규정(인용조항 포함)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부 칙(07. 9. 5, 규칙 제66호)

이 학칙은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되, 제83조 평생지도교수제의 졸업인정여부는 200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07. 9. 21, 규칙 제67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동전)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된 학부 재적자로 본다.

부 칙(07. 11. 7, 규칙 제69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12. 21, 규칙 제71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2. 26, 규칙 제72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되는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내 학부(전공), 학과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생활과학대학에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중 201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계항공시스템공학부의 각 전공 학생은 이 개정학칙의 정밀기계공학부, 기계설계공학부,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재적생으로, 신소재공학부의 각 전공 학생은 이 개정학칙의 신소재공학부, 고분자나노공학과 재적생으로, 환경화학공학부 각 전공 학생은 이 개정학칙의 화학공학부, 환경공학과 재적생으로 보고,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학과 재적생은 이 개정학칙의 동물자원과학부 각 전공의 재적생으로 보며,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의 각 전공학생은 이 개정학칙의 생활과학부, 주거환경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07학년도 이전 재적생은 원에 의하여 소속 변경전 학부로 졸업할 수 있다.

제3조(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은 2010년 2월 28일까지 익산대학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개정령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 익산대학의 규정을 적용하고, 익산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치과대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치과대학에 재적하는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종전 학칙 제58조(교과)제2항 및 제77조(졸업 및 수료학점)에 따라 이수해야할 학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체과목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칙 등이 정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그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08. 10. 7, 규칙 제77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제1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동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된 학부(과)의 재적자로 보며, 휴학 후 복학할 때 학부의 분리로 당해 학부에 복학할 수 없을 경우,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전공 관련 분리된 학과로, 전공 미 배정 학생은 분리된 학과 중 희망하는 학과로 복학한다.

④(동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생정원 조정에 의한 학부의 분리·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08. 12. 17, 규칙 제80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된 학과의 재적자로 본다.

③(동전) 이 학칙 제83조 제1항의 [별표 3] 는 2012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09. 2. 27, 규칙 제83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된 학부(전공) 재적자로 본다.

부 칙(09. 4. 20, 규칙 제8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6. 4. 규칙 제87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9. 10. 규칙 제89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11. 16, 규칙 제91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부(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분리·명칭변경으로 당해 학부(과) 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분리·명칭 변경된 학부(과)·전공으로 복학한다. 단, 통·폐합된 건축학과 및 건축도시공학부(건축학전공)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에 의하여 졸업연도까지 존속한다.

③(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건축학과 및 건축도시공학부(건축학전공) 재적생이 건축공학부로 소속변경을 원하는 경우 건축공학부로 소속 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12.05.16)

④(동전)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휴학 후 복학할 때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 재학 중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생정원조정에 의한 학부(과) 소속의 변경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12.05.16)

⑤(동전) 제83조제1항과 제83조제3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12.05.16)

부 칙(10. 2. 26 규칙 제96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과대학 재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과대학 법학과는 2018년 2월말까지 존속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법과대학 법학과 신입생 및 편입생을 선발하지 않으며, 법과대학으로의 전학도 허용하지 않는다.

부 칙(10. 6. 10 규칙 제10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0. 20 규칙 제101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부(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분리·명칭변경으로 당해 학부(과) 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분리·명칭 변경된 학부(과)·전공으로 복학한다.

③(동전) 201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휴학 후 복학할 때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 재학 중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생정원조정에 의한 학부(과) 소속의 변경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직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부 칙(11. 2. 18 규칙 제10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8. 3 규칙 제108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8. 26 규칙 제109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중 제6조, 제38조, 제58조, 제60조, 제75조~제77조의 수의예과 소속변경에 관한 규정은 2012학년도 제1학기(2012. 3. 1)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학칙 적용당시 자연과학대학 수의예과 재적생은 수의과대학 수의예과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부 칙(11. 10. 19 규칙 제110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부(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분리·명칭변경으로 당해 학부(과) 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분리·명칭 변경된 학부(과)·전공으로 복학한다.

②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휴학 후 복학할 때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 재학 중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생정원조정에 의한 학부(과) 소속의 변경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직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③ 이 학칙 중 제60조(교과과정)제2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11. 12. 01 규칙 제113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2. 30 규칙 제119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18조(학칙개정)제2항은 2012. 1. 21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전북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3조제1항, 제8장, 제38조 내지 제40조 중 “입학관리본부”를 “입학본부”로 하고 “입학관리본부장”을 “입학본부장”으로, “입학관리부분부장”을 “입학부분부장”으로 한다.

② 「전북대학교 위임 전결 규정」 [별표 2]의 “입학관리본부”를 “입학본부”로 한다.

③ 「전북대학교 입학관리본부 규정」 제1조 내지 제4조 중 “입학관리본부”를 “입학본부”로 하고 “입학관리본부장”을 “입학본부장”으로, “입학관리부분부장”을 “입학부분부장”으로 한다.

④ 「전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입학관리본부장”을 “입학본부장”으로 하고 “입학관리부분부장”을 “입학부분부장”으로 한다.

부 칙(12. 1. 26 규칙 제12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2. 27 규칙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제60조 제2항의 법과대학 졸업학점 변경은 2012학년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학칙 변경 전 재적생이 이미 이수한 2011학년도 2학기 까지의 성적은 기존 실점의 총평균 및 총평점평균을 그대로 표기하고, 2012학년도 부터의 성적은 등급으로 부여한 총평점평균 및 평점평균의 실점환산점수로 표기하며 성적평균 산출식은 별도로 정한다.(12.07.31)

③제83조 제1항 및 제3항(외국인 유학생과 관련)의 경우 2012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12. 5. 18 규칙 제125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전임강사에 관한 개정은 2012. 7. 22부터 시행한다.(12.06.25)

제3조(다른 학칙의 개정) ①대학원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입학자격)제1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교수회의)제1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③의치학전문대학원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교수회의)제2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④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교수회의)제1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4조 부칙(09. 11. 26 규칙 제91호)의 개정

부칙 09. 11. 26 규칙 제91호 (경과조치)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건축학과 및 건축도시공학부(건축학전공) 재적생이 건축공학과로 소속변경을 원하는 경우 건축공학과로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

부 칙(12. 6. 25 규칙 제127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2012. 5. 18 규칙 제125호)의 개정 부칙 (2012. 5. 18 규칙 제125호) 제2조(경과규정)의 본문 중 “제30조 내지 제32조의”를 삭제하고 시행일을 “2012. 7. 22”로 변경한다.

부 칙(12. 7. 31 규칙 제128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8. 24 규칙 제13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8. 31 규칙 제131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2. 21 규칙 제133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복학의 경우 학부(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 분리, 명칭변경으로 당해 학부(과) 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 분리, 명칭 변경된 학부(과)·전공으로 복학한다.

③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휴학 후 복학할 때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 재학 중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생정원조정에 의한 학부(과) 소속의 변경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직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부 칙(13. 2. 26 규칙 제137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이전에 행한 업무(제39조 관련)는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학칙 및 규정의 개정) ①전북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 기간과 임신·출산·육아 기간(2년 이내에 한함)은 입영통지서 사본, 임신·출산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의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육아 휴학의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에 한한다.

제19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 기간과 임신·출산·육아 기간(2년 이내에 한함)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의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북대학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 기간과 임신·출산·육아 기간(2년 이내에 한함)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의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전북대학교 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 기간과 임신·출산·육아 기간(2년 이내에 한함)은 입영통지서 사본, 임신·출산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의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육아 휴학의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에 한한다.

⑤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군입대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임신·출산·육아 휴학자는 임신·출산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를 위하여 휴학 하는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에 한한다.

⑥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중 “군입대” 를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로 한다.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입대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임신·출산·육아 휴학자는 임신·출산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를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에 한한다.

⑦의·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 중 “군입대” 를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로 한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입대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임신·출산·육아 휴학자는 임신·출산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를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에 한한다.

부 칙(13. 2. 28 규칙 제139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5. 27. 규칙 제140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복학의 경우 학부(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 분리, 명칭변경으로 당해 학부(과) 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 분리, 명칭 변경된 학부(과)·전공으로 복학한다.

②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휴학 후 복학할 때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 재학 중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생정원조정에 의한 학부(과) 소속의 변경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교직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③ 농업경제학과 내 생명자원유통경제학전공은 2016학년도까지만 존속하고 폐지한다.

④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변경되는 무용학과 발레뮤지컬댄스 전공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졸업년도까지 적용한다.

⑤ 2017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으로 학제가 전환됨에 따라 2015학년도 의예과 모집정원은 77명, 2017학년도 의학과 학사편입 모집정원은 33명으로 하며, 2015학년도 치의예과 모집정원은 28명, 2017학년도 치의학과 학사편입 모집정원은 12명으로 한다.

부 칙(13. 8. 26. 규칙 제143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복학의 경우 학부(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 분리, 명칭 변경으로 당해 학부(과) 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 분리, 명칭 변경된 학부(과)·전공으로 복학한다.

② 토목공학과 내 사회기반공학전공은 2016학년도까지만 존속하고 폐지한다.

③ 학점이월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1. 29. 규칙 제149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60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2. 20. 규칙 제150호)

이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06.23. 규칙 제154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제3항 및 제54조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10.30 규칙 제156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별표 1 및 제11조의 별표 2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과 또는 전공의 명칭변경으로 당해 학과 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명칭 변경된 학과·전공으로 복학한다.

부 칙(14.12.16. 규칙 제16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02.27. 규칙 제162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기획처장, 산학협단장’을 ‘산학연구처장,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산학협력단장’을 ‘산학연구처장’으로 한다.

② ‘전북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③ ‘전북대학교 박물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학생처장, 기획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④ ‘전북대학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추진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기획처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⑤ ‘전북대학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⑥ ‘전북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제협력본부장’을 ‘산학연구처장, 기획조정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기획처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⑦ ‘전북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기획처장, 기획부처장, 교무부처장 1인, 산학협력부단장’을 ‘기획조정본부장, 정책기획본부장, 교무학사부처장, 산학협력부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기획처장, 기획부처장’을 ‘기획조정본부장, 정책기획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 ‘기획부처장’을 ‘정책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⑧ ‘전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을 ‘교무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산학연구처장, 사무국장,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⑨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학생처장, 기획처장, 도서관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 기획조정본부장, 중앙도서관장’으로 한다.

⑩ ‘전북대학교 최고위과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기획처’를 ‘대외협력본부’로 한다.

제4조제3항 ‘기획처장’을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기획처(발전지원부)’를 ‘대외협력본부(발전지원부)’로 한다.

⑪ ‘전북대학교 평생지도교수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취업지원본부’를 ‘취업지원과’로, ‘취업지원본부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취업지원본부’를 ‘취업지원과’로 한다.

제3조제2항 ‘위원회는 취업지원본부장, 취업지원본부장, 취업지원본부 행정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취업지원본부장, 간사는 취업지원본부 진로상담팀 팀장이 담당한다.’를 ‘위원회는 학생·취업지원처장, 취업지원부처장, 취업지원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 간사는 취업지

원과 팀장이 담당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취업지원본부’를 ‘취업지원과’로 한다.

⑫ ‘전북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 산학연구처장,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⑬ ‘전북대학교 부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산학협력부단장’을 ‘산학협력부처장’으로 한다.

⑭ ‘전북대학교삼성문화회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덕진동 1가 664-14번지’를 ‘백제대로 567’로 한다.

제5조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발전지원부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 사무국장, 기획조정본부장, 발전지원부분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발전지원부처장’을 ‘발전지원부분부장’으로 한다.

⑮ ‘전북대학교교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학생처장, 기획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⑯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학생처장, 기획처장, 교무부처장(1인)’을 ‘학생·취업지원처장, 기획조정본부장, 교원인사부처장’으로 한다.

⑰ ‘전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학생처장, 기획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⑱ ‘전북대학교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⑲ ‘전북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각 대학의 학장과’를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산학연구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교무처장’을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⑳ ‘전북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학생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한다.

제3조제1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학생부처장, 교무부처장’을 ‘학생지원부처장, 교무학사부처장’으로 한다.

㉑ ‘전북대학교 사회봉사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학생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한다.

제3조제1항 ‘학생처장, 학생처 전문위원’을 ‘학생·취업지원처장, 학생지원부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교무처 전문위원, 기획처 전문위원, 국제교류부장’을 ‘교무학사부처장, 정책기획부분부장, 국제협력부분부장’으로 한다.

㉒ ‘전북대학교 장학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국제협력본부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 교무처장, 산학연구처장, 사무국장, 기획조정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㉓ ‘전북대학교 체육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학생처장, 기획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제8조 ‘학생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한다.

㉔ ‘전북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실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 기획조정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한다.

㉕ ‘전북대학교 학생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학생처장, 학생부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 학생지원부처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㉖ ‘전북대학교 학생회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㉗ ‘전북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학생부처장’을 ‘학생지원부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교무부처장, 종합인력개발부원장’을 ‘교무학사부처장, 취업지원부처장’으로 한다.

㉘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학생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한다.

제6조제1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학생부처장’을 ‘학생지원부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학생부처장’을 ‘학생지원부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학생부처장’을 ‘학생지원부처장’으로 한다.

㉙ ‘전북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학생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한다.

제9조제1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학생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한다.

㉚ ‘전북대학교 부안연습림관리관및연수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학생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한다.

제7조제1항 ‘학생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한다.

㉛ ‘전북대학교 홍보기획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입학관리본부장, 캠퍼스개발본부장, 홍보부처장, 국제교류부처장, 대학신문방송사 주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외협력실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 산학연구처장, 사무국장, 기획조정본부장, 입학본부장, 아트그린캠퍼스추진단장, 홍보실장, 발전

지원부분부장, 대학신문방송사 주간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외협력부총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 '홍보부'를 '홍보실'로 한다.

㉔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기획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국제교류부처장, 취업지원부분부장'을 '정책기획부분부장, 취업지원부처장, 산학협력부처장, 국제교류부분부장'으로 한다.

㉕ '전북대학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본부 국·처장'을 '처·국·본부장'으로 한다.

㉖ '전북대학교 기념물건립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학생처장, 기획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㉗ '전북대학교 국제학술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2항, 동조 제3항, 동조 제4항, 제12조제2항, 제22조 제1항, 동조제2항 '국제교류부'를 '국제협력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국제협력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국제교류부처장'을 '대외협력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국제협력부분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국제협력본부장'을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국제교류부처장'을 '국제협력부분부장'으로 한다.

㉘ '전북대학교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국제협력본부 국제교류부'를 '대외협력본부 국제협력부'로 한다.

㉙ '전북대학교 초청 외국인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국제교류부'를 '국제협력부'로 한다.

㉚ '전북대학교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국제협력본부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제교류부처장'을 '대외협력본부장, 교무처장, 산학연구처장, 국제협력부분부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국제협력본부장'을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한다.

㉛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추진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국제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국제협력본부장 및 기획처장'을 '대외협력본부장 및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국제협력본부장'을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한다.

㉜ '전북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 '전북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운영규정'을 '전북대학교 대외협력본부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동조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제6호,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국제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한다.

제2조 '국제학술교류, 교원 국외여행, 국외 유학생 관리, 언어교육지원과'를 '대외협력, 대학발전기금 관리, 삼성문화회관 관리, 약학대학유치추진, 국제학술교류, 교원 국외여행, 국외 유학생 관리, 언어교육지원과'로 하다.

제3조 조명 '본부장, 부처장'을 '본부장, 부분부장, 부장'으로 한다.

동조제1항 ‘본부장과 국제교류부처장 및 언어교육부처장을 두며’를 ‘본부장과 발전지원부분부장, 국제협력부분부장 및 언어교육부장을 두며’로 한다.

동조제3항 ‘국제교류부처장, 언어교육부처장’을 ‘발전지원부분부장, 국제협력부분부장, 언어교육부장’으로 한다.

제4조 ‘국제교류부 및 언어교육부를 두고’를 ‘발전지원부(약학대학유치추진단), 국제협력부 및 언어교육부를 두고’로 한다.

제5조 조명 및 동조제1항 ‘국제교류부’를 ‘국제협력부’로 한다.

동조제2항제7호 ‘국제교류’를 ‘국제협력’으로 한다.

④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학생처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⑤ ‘전북대학교 교육시설활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을 ‘학생·취업지원처장, 산학연구, 사무국장,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캠퍼스개발본부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기획조정본부장이 된다’로 한다.

동조제4항 ‘캠퍼스개발본부’를 ‘기획과’로 한다.

제6조제4항 ‘위원장은 캠퍼스개발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캠퍼스개발 부분부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아트그린캠퍼스조성추진단장이 된다.’로 한다.

동조제5항 ‘BTO분과는 교무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대외협력실장’을 ‘BTO분과는 교무처장·사무국장·기획조정본부장·대외협력본부장’으로 하고, ‘아트캠퍼스분과는 교무처장·학생처장·사무국장·산학협력단장·입학관리본부장’을 ‘아트캠퍼스분과는 교무처장·학생·취업지원처장·산학연구처·사무국장·입학본부장’으로 한다.

동조제6항 ‘캠퍼스개발본부’를 ‘아트그린캠퍼스추진단’으로 한다.

⑥ ‘전북대학교 시설공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시설공간활용실무위원회)제3항 ‘캠퍼스개발본부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하고,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학사관리과장, 기획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및 시설관리과장’을 ‘교무학사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산학협력부처장, 공간기획부분부장, 학사관리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설관리과장 및 기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15.05.28. 규칙 제163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09.14. 규칙 제167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10.19. 규칙 제172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12.01 규칙 제175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제81조의 신설 단서규정은 동 규정 시행 전의 수료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15.12.31 규칙 제176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6.03.31 규칙 제177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6.06.02 규칙 제179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제1항의 [별표 1]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②(학과(부) 또는 전공의 통·폐합, 분리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과(부) 또는 전공의 통·폐합, 분리 및 명칭 변경으로 해당 학과(부) 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 분리 및 명칭 변경된 학과(부)·전공으로 복학한다.

③(복수(연계)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1항 [별표 1] 의 복수(연계)전공 중 범중화권문화·비즈니스학, 일본통상학, 독일EU통상학, 아프리카통상학, 영상미디어인문학, 라틴아메리카통상학, 유무형 문화유산학, 공공행정인문학 및 문화ICT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16.06.16 규칙 제181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6.07.14 규칙 제183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6.10.18 규칙 제184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은 2016학년도부터 이 학칙을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16.11.24 규칙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수(연계)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1항 [별표 1]의 복수(연계)전공 중 폐지된 영상산업공학은 이 개정학칙 시행일 현재 이수 중인 학생이 졸업 시까지 존속한다.

부 칙(17.02.28 규칙 제190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개발협력학사 수여에 대한 적용례) 국제개발협력학사 수여는 2016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17.05.16 규칙 제191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제13조의3 [별표 4] 중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추진단의 운영지도 부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이 학칙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17.08.02 규칙 제193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의 제5조 제1항의 글로벌프린티어칼리지 신설,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4항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학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하며,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과(부) 또는 전공의 통·폐합, 분리 및 명칭 변경으로 해당 학과(부) 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 분리 및 명칭 변경된 학과(부)·전공으로 복학한다.

③ 이 개정학칙 제64조는 2017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17.08.30 규칙 제195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7.11.17 규칙 제19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7.12.28 규칙 제197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8.02.28 규칙 제200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의 제60조제13항, 제76조제1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8.03.29 규칙 제202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8.05.28 규칙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하며,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과(부) 또는 전공의 명칭 변경으로 해당 학과(부) 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명칭 변경된 학과(부)·전공으로 복학한다.

부 칙(18.09.20 규칙 제205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8.12.20 규칙 제209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학년도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모집단위를 옮기는 경우에는 이 개정학칙의 제49조제1항 본문 및 동조 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19.02.15 규칙 제211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의 제77조제4항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19.02.28 규칙 제212호)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04.15 규칙 제214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05.17 규칙 제215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05.31 규칙 제218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5조제1항 약학대학 신설 및 제6조제1항의 [별표 1]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08.01 규칙 제219호)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 규칙 제221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6항, 제8항, 제72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7조제3항제5호, 제77조제8항, 제83조제1항 [별표3] 중 약학대학 신설에 관련된 학칙은 2020학년도 제1학기(2020.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01 규칙 제223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9 학칙 제224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제53조제4항, 54조, 제77조제4항은 2020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제6조제1항의 [별표 1]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26 학칙 제231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73조제4항은 2020학년도 제1학기 학부과정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24. 학칙 제235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1.02.01. 학칙 제239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학생 유급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8항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1]

제	호			
수 료 증 서				
계 인	성 명			
	19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 학부(과)				
년의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전북대학교		대학장 (학위)		(성명)
				인
전 북 대 학 교 총 장 (학위)		(성명)		인

[별지서식 2]

제	호			
증 서				
성 명				
19 년 월 일				
위 사람은 대학 소정의 전 과정(전공, 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고				
학사 및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대학장 (학위) (성명)		직인	대학장 (학위) (성명)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전 북 대 학 교 총 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 _____				

[별지서식 2-1]

제	호	학	위	증
계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전 북 대 학 교 총 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 전북대-학점-연도(학)-일련번호				

[별지서식 2-2](신설 15.09.14, 20.01.07)

B-일련번호

Jeonbuk National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upon

영문 성명

the degree of

Bachelor of 영문 학위명

in recognition of the completion of advanced study in the

영문 전공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 ○○○ day of ○○○, two thousand ○○○.

총장 서명

Presiden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소속 대학장 서명

Dean, College of 영문 대학명

Diploma No. JBNUy(B)학위번호

[별지서식 3]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 학부(과)의 전과목을 수료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전북대학교 대학장 (학위) (성명) 직인

전 북 대 학 교 총 장 (학위) (성명) 직인

[별지서식 4]

재 학 기 간 연 장 신 청 서

대학 학과

성 명

위 본인은 대학 학부(과)에서 을 이수중인 자로서
년도 제 학기까지 재학기간을 연장하여 을 이수하고자
하오니 학과장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실장
(부학장)

년 월 일

위본인

인

학 과 장

지도교수

대학장 귀하

[별표 1] (15.09.14, 16.03.31, 16.06.02, 16.11.24, 17.08.02, 18.05.28, 19.05.17, 19.05.31, 20.01.07, 20.03.01, 20.05.19, 21.02.01.)

2021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 정원표

○ 전주캠퍼스

대학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개설전공
간호대학 (100명)	간호학과	100	간호학
	건축공학과	50	건축공학
공과대학 (1,226명)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	83	고분자·나노공학(42), 유기소재섬유공학(41)
	기계공학과	62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부	75	기계설계공학(56), 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19)
	기계시스템공학부	74	응용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
	도시공학과	21	도시공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40	헬스케어기기공학, 헬스케어정보공학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37	산업정보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공학과	23	소프트웨어공학
	신소재공학부	119	금속시스템공학(37), 전자재료공학(41), 정보소재공학(41)
	양자시스템공학과	15	양자시스템공학
	융합기술공학부	53	IT융합기전공학(26), IT응용시스템공학(27)
	전기공학과	42	전기공학
	전자공학부	157	나노전자공학, 융합IT공학, 제어로봇공학, 정보통신공학, 창의융·복합시스템공학
	컴퓨터공학부	75	컴퓨터공학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136	자원·에너지공학(40), 토목공학(57), 환경공학(39), 에너지융합공학
	화학공학과	90	나노화학공학, 생명화학공학, 에너지화학공학
	항공우주공학과	36	항공우주공학
	IT정보공학과	38	IT정보공학
글로벌융합대학 (65명)	국제이공학부	10	엔지니어링사이언스
	국제인문사회학부	20	지미카터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
	공공인재학부	35	공공정책학
농업생명과학 대학 (407명)	농경제유통학부	42	농업경제학(22), 식품유통학(20)
	농생물학과	31	농생물학
	동물생명공학과	27	동물생명공학
	동물자원학과	32	동물자원과학
	목재응용공학과	25	목재응용과학
	산림환경공학과	29	산림환경과학
	생명자원융합학과	10	생명자원융합학
	생물산업기계공학과	27	생물산업기계공학
	생물환경화학학과	32	생물환경화학
	식품공학과	46	식품공학
	원예학과	27	원예학
	작물생명공학과	31	작물생명과학, 미래농생명산업
	조경학과	19	조경학
사범대학 (215명)	지역건설공학과	29	지역건설공학
	과학교육학부	60	물리교육(15), 생물교육(15), 지구과학교육(15), 화학교육(15), 통합과학교육
	교육학과	15	교육학
	국어교육과	20	국어교육
	독어교육과	10	독어교육
	수학교육과	20	수학교육
	역사교육과	12	역사교육
	영어교육과	20	영어교육
	윤리교육과	15	윤리교육
	일반사회교육과	12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과	11	지리교육 통합사회교육
	체육교육과	20	체육교육

대학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개설전공
사회과학 대학 (194명)	사회복지학과	27	사회복지학
	사회학과	31	사회학
	신문방송학과	21	신문방송학, <u>스마트융합미디어학</u>
	심리학과	26	심리학
	정치외교학과	49	정치외교학, <u>동아시아·다문화</u>
	행정학과	40	행정학
상과대학 (329명)	경영학과	110	경영학
	경제학부	66	경제학, 금융·연금경제학
	무역학과	98	무역학
	회계학과	55	회계학, <u>연금관리학</u>
생활과학 대학 (104명)	식품영양학과	30	식품영양학
	아동학과	22	아동학
	의류학과	25	의류학
	주거환경학과	27	주거환경학, <u>실내디자인</u>
약학대학 (30명)	약학과	【30】	약학
예술대학 (142명)	무용학과	22	발레·컨템포러리제즈, 한국무용, 현대무용
	미술학과	32	가구조형디자인, 서양화, 조소, 한국화
	산업디자인학과	36	시각영상디자인, 제품디자인
	음악과	26	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한국음악학과	26	기악, 성악·작곡·이론
의과대학 (142명)	의예과 《의학과》	142 《142》	의학
인문대학 (368명)	고고문화인류학과	24	고고문화인류학, <u>유무형문화유산학</u>
	국어국문학과	31	국어국문학, <u>문화ICT학</u>
	독일학과	30	독일학, 독일EU통상학
	문헌정보학과	32	문헌정보학, <u>신한류문화콘텐츠</u>
	사학과	41	사학
	스페인·중남미학과	32	스페인·중남미학, <u>라틴아메리카통상학</u>
	영어영문학과	44	영어영문학
	일본학과	28	일본학, 일본지역학, 일본통상학
	중어중문학과	41	중어중문학, 중국지역학, <u>법중화권문화·비즈니스학</u>
	철학과	32	철학, 공공행정인문학
	프랑스·아프리카학과	33	프랑스·아프리카학, <u>아프리카통상학</u> , 영상미디어인문학
자연과학 대학 (288명)	과학학과	18	과학학
	물리학과	29	물리학
	반도체과학기술학과	29	반도체과학기술학
	생명과학부	63	분자생물학(33), 생명과학(30)
	수학과	25	수학
	스포츠과학과	13	스포츠과학
	지구환경과학과	28	지구환경과학
	통계학과	33	통계학
	화학과	50	화학
치과대학 (40명)	치의예과 《치의학과》	40 《40》	치의학
	스마트팜학과	30	스마트팜
합계	17학부 74학과	3,680	

※ 개설전공 중 밑줄 친 부분은 복수연계·융합전공으로만 운영함

※ 【 】 은 202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편입학으로 선발하는 입학정원이며, 2022학년도부터 통합6년 신입학으로 선발하는 입학정원임

※ 《의학과》 및 《치의학과》의 입학정원은 각각 의예과·치의예과의 본과 인원으로 《 》밖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글로벌융합대학 융합학부

- 제6조의2(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에 따른 융합전공 운영을 위하여 입학 정원이 없는 융합학부를 글로벌융합대학에 설치
· 개설전공 : LAB융합, 예술융합창작

○ 특성화캠퍼스

대학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개설전공
수의과대학 (50명)	수의예과 《수의학과》	50 《50》	수의학
환경생명자원 대학 (118명)	생명공학부	70	생명자원소재공학, 환경생명공학
	생태조경디자인학과	27	생태조경디자인학
	한약자원학과	21	한약자원학
합계	1학부 3학과	168	

※ 《수의학과》의 입학정원은 수의예과의 본과 인원으로 《 》밖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총계(전주캠퍼스, 특성화캠퍼스)

대학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개설전공
전주캠퍼스	17학부 74학과	3,680	120
특성화캠퍼스	1학부 3학과	168	5
총계	18학부 77학과	3,848	125

1. 202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모집단위 신설

- 약학대학 약학과(30명) : 편입학 정원

나. 모집단위 정원조정

- 기계공학과(감2), 도시공학과(감1), 기계시스템공학부(감2), 항공우주공학과(감1), 전기공학과(감1), 바이오메디컬공학부(감1),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감1), 산림환경과학과(감1), 생물산업기계공학과(감1), 작물생명과학과(감1), 농생물학과(감1), 지역건설공학과(감1), 행정학과(감1), 사회학과(감1), 경제학부(감1), 경영학과(감2), 회계학과(감1), 무역학과(감1), 프랑스·아프리카학과(감1), 영어영문학과(감1), 독일학과(감1), 물리학과(감1), 화학과(감1), 의류학과(감1)

2. 202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모집단위 신설 : 스마트팜학과 (30명) - 편입학 여석 활용

나. 생명자원융합학과 주·야간 전환 : 야간→주간

다. 학제전환에 따른 학사편입학(2017~2020학년도) 종료 반영(의학과 33명, 치의학과 12명)

3. 202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내용

가. 모집단위 학제개편

- 약학대학 약학과(30명) : 2+4년제(편입학) → 6년제(신입학) ※ '22~23 편입학 병행모집(정원외)

[별표 1-1] (신설 14.10.30, 18.09.20, 19.02.15, 20.03.01)

학위과정별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

1. 학사과정

대 학	계 열	학 과 · 전 공 명 [협약기관]	입 학 정 원	설 치 · 운 영 기 간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계열	농생명과학과 [고창군 외]	30	20.03.01.~24.02.29.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계열	농업시스템학과 (장수군)	30	19.03.01.~23.02.28.

[별표 2](15.05.28, 17.08.30, 17.12.28, 20.03.01, 21.02.01.)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 명칭 및 수

대학(원)	행정실 명칭	행정실 수
공과대학	공과대학·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통합행정실	1
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	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 글로벌융합대학 통합행정실	1
글로벌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인문대학 통합행정실	1
인문대학		
사범대학	사범대학·생활과학대학 통합행정실	1
생활과학대학		
상과대학	상과대학 행정실	1
간호대학	간호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 통합행정실	1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예술대학	예술대학 행정실	1
약학대학	약학대학·자연과학대학 통합행정실	1
자연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환경생명자원대학 통합행정 실	1
환경생명자원대학		
계 17		10

[별표 3](16.03.31, 16.06.02, 16.06.16, 17.02.28, 18.05.28, 19.02.15, 20.01.07,
20.03.01, 21.02.01.)

학 위 종 별

학위종별	졸업대학	학부(학과)
간호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경영학사	상과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제학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유통학부
	상과대학	경제학부
공학사	공과대학	각 학부(학과)
	글로벌융합대학	국제이공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재응용공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식품공학과
교육학사	사범대학	교육학과
농학사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산림환경과학과, 농생물학과, 작물생명과학과, 원예학과, 생물환경화학과, 동물생명공학과, 생명자원융합학과, 농생명과학과(고창캠퍼스 계약학과), 농업시스템학과(계약학과)
디자인학사	생활과학대학	실내디자인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무용학사	예술대학	무용학과
문학사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국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동아시아·다문화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인문대학	각 학과 [문헌정보학과, 라틴아메리카통상학, 일본통상학, 독일EU통상학, 아프리카통상학, 영상미디어인문학, 공공행정인문학 제외]
문헌정보학사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미술학사	예술대학	미술학과
상학사	상과대학	무역학과
약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의류학사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수의학사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음악학사	예술대학	음악과, 한국음악학과
의학사	의과대학	의학과
치의학사	치과대학	치의학과
이학사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수학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주거환경학과
	자연과학대학	각 학과(학부) [스포츠과학과 제외]
	환경생명자원대학	생명공학부, 한약자원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정치학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경학사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
체육학사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행정학사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공공정책학사	글로벌융합대학	공공인재학부
국제학사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	국제인문사회학부
국제통상학사	인문대학	라틴아메리카통상학, 일본통상학, 독일EU통상학, 아프리카통상학
영화영상미디어학사	인문대학	영상미디어인문학
공공행정인문학사	인문대학	공공행정인문학
국제개발협력학사	글로벌융합대학	국제개발협력학
미래농생명산업학사	농업생명과학대학	미래농생명산업
연기금관리학사	상과대학	연금관리학
예술학사	글로벌융합대학	예술융합창작
공학융합학사	글로벌융합대학	IAB융합전공

[별표 4](15.09.14, 15.12.31, 16.03.31, 16.06.02, 16.11.24, 17.05.16, 17.08.30, 17.11.17, 17.12.28, 18.09.20, 19.02.28, 19.05.17, 19.05.31, 20.01.07, 20.03.01, 20.12.24., [21.02.01.](#))

부 속 시 설

구분	명칭
부속시설	지역혁신전략실(대외협력부총장), 공동실험실습관, 교원양성지원센터(이상 교무과), 보건진료소, 신문방송사, 부안학술립관리관및연수관, 체육부,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인권센터, 행복드림센터, 학군단(이상 학생과), 고창캠퍼스 관리본부(기획과), 교육성과관리센터(성과관리부), 연구실안전관리센터(산학협력부), 외국어글쓰기센터(연구진흥부), 방사선안전관리소(시설관리과), 과학영재교육원, 출판문화원, 정읍산학협력지원센터(이상 산학협력단), 역사관(홍보실), 자연사박물관(이상 발전지원부), 창업보육센터, 희망전북창업보육센터(이상 창업지원단), 원격평생교육원(평생교육원), 공과대학부속공장, 공과대학자동차산학협력원(이상 공대), 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농장, 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동물사육장, 농업생명과학대학학술립, 목재가공지원센터(이상 농생대), 사범대학교육연수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이상 사대), 기록관리학교육원, 인문융합학부(이상 인문대), 실험동물센터,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이상 수의대), 환경생명자원대학부속실습장(환생대)
특별사업단	전북 국제개발협력센터(국제협력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기획과)
학교기업	전북대협, 전북동물의료센터, 전북대학교 에코하우징(이상 산학협력단)

* 학칙 상 조직설치 순서에 맞게 연구처 및 산학협력처와 사무국 소속 부속시설 순서 변경

[별표 5] - (삭제 2012. 7. 31.)